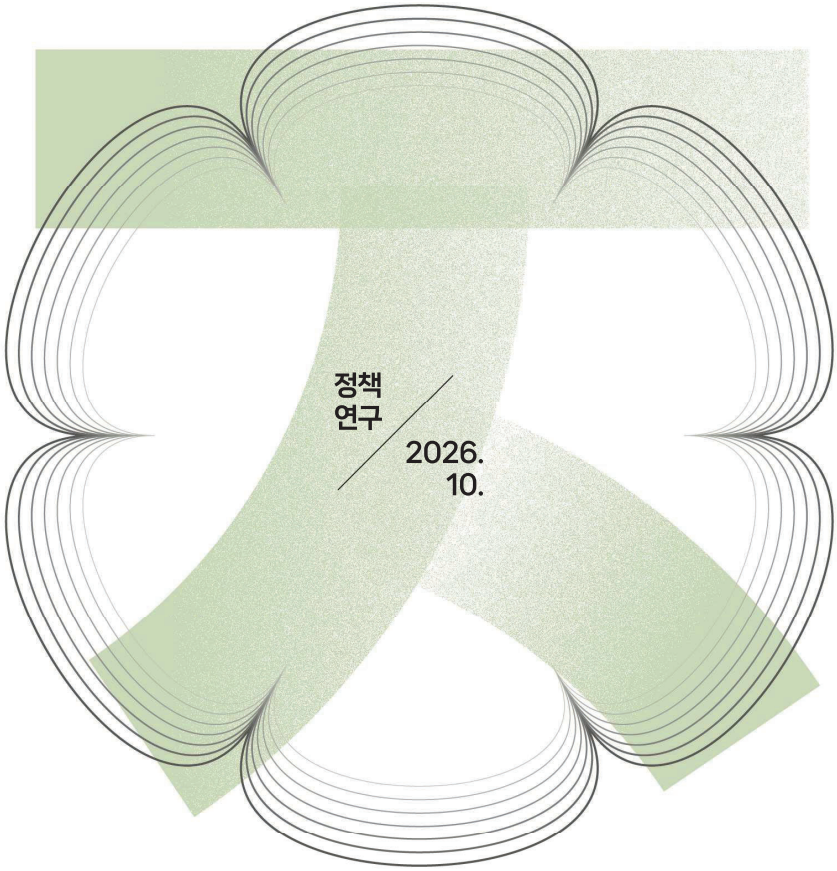
정책연구 2026-06

김해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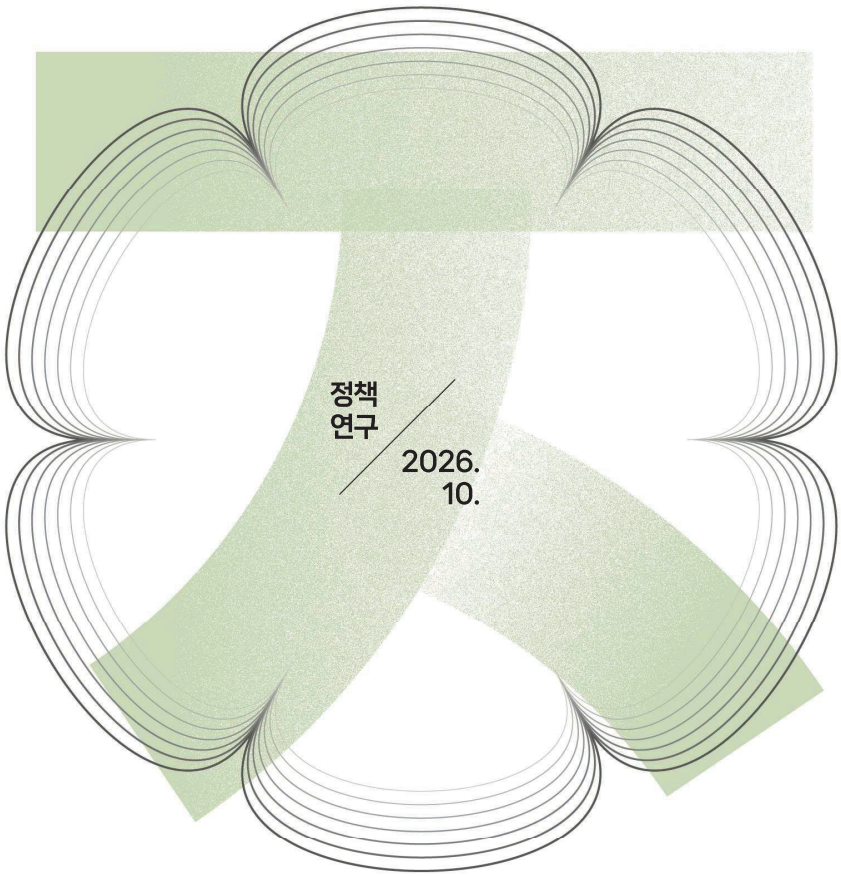
강길주



GHRI 김해연구원
Gimhae Research Institute

김해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연구

강길주



GHRI 김해연구원
Gimhae Research Institute

연구진 profile

강길주	• 연구책임 •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함의 |

■ **김해시 2025년 총인구는 56만 5,432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하고 순유입을 기록하는 등 전체 인구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 청년인구 감소와 20대 순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외국인 주민 및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주거지역과 읍·면 및 원도심 간 인구구조와 생활서비스 접근성에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연령·가구·지역·국적별 정책 수요와 인구의 이동·정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인구구조, 이동·정착, 돌봄 부담 및 정주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체계를 설계함**

❍ 평가기준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인구정책 부합성, 정주환경 개선성, 시민체감도 및 정책효율성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함

❍ 평가방법은 사업부서의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를 결합하고, 평가결과는 사업의 유지·확대·보완·조정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돌봄·보육 분야의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한 결과, 권역별 접근성, 돌봄 인력과 운영인력 확보, 대기시간 단축, 수요·공급 간 연계, 시설별 운영 조정 및 유사 지원제도와의 관계 점검이 공통적인 개선 과제로 확인됨**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별도의 평가업무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정책과 사업을 인구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정책관리 수단으로 운영해야 함**

❍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인구영향평가 조례를 마련하고,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서 작성방법, 전문가 검토, 부서 의견수렴 및 이행점검 절차를 표준 운영지침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본문 차례 |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Ⅱ 인구영향평가의 개념과 운영 사례 ····· 4

1. 인구영향평가 개념과 체계 ····· 4
2. 국내 인구영향평가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7

Ⅲ 김해시 인구 변화와 정책 여건 ····· 13

1. 김해시 인구 변화 ····· 13
2. 인구영향평가 도입 정책 여건 및 과제 ····· 19

Ⅳ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체계 설계 ····· 23

1.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기본 방향 ····· 23
2. 시범 평가 대상 및 적용 범위 ····· 25
3. 평가 기준 및 세부 지표 ····· 28

Ⅴ 돌봄·보육 분야 시범 평가 ····· 34

1. 시범 평가 추진 개요 ····· 34
2. 시범 평가 결과 ····· 36

Ⅵ 인구영향평가 운영체계 구축 방안 ····· 54

1. 운영체계 구축 방향 ····· 54
2.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추진 체계 ····· 56
3. 제도적 기반 확대 ····· 58
4. 평가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 방안 ····· 60
5.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로드맵 ····· 63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64

1.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64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68

참고문헌 69

부 록 70

Ⅰ 서론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저출생·고령화를 특징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생산연령인구 감소, 외국인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변화에 직면함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출생아(25만 4,500명)보다 사망자(36만 3,400명)가 많아 10만 8,900명의 자연 감소가 발생함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13.0%에서 2024년 19.5%로 상승한 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3.4%에서 2024년 70.0%로 하락함
- 2022년 전국 15~39세 청년인구의 53.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이 69.6%를 차지함
- 또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2015년 136만 4천 명에서 2024년 204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1인 가구 역시 같은 기간 520만 가구에서 804만 5천 가구로 증가함

❍ 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 중심에서 인구의 규모·구조·분포와 지역 간 불균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인구전략기본법」(2026.6.9.개정)에 따르면,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이동 등 포괄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인구전략기본법」 제41조에 근거,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도 개별 지원사업 확대보다 정책의 인구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환류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김해시는 부산, 창원 등과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인구감소지역과는 다른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기준 김해시 총인구는 56만 5,432명으로 전년보다 3,626명(0.6%) 증가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8명, 전입 5만 6,628명, 전출 5만 4,866명으로 1,762명의 순유입을 기록함
- 반면에 20대 순유출 규모는 2023년 2,562명에서 2025년 1,472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순유출 상태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70,208명(13.1%) 대비 2025년 86,871명(16.3%)으로 증가함

❍ 따라서 김해시의 인구정책은 청년층의 유출과 정착, 고령화, 외국인의 정착, 생산연령인구 및 돌봄 수요 변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출산·보육, 전입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산업, 주택, 교통, 교육·돌봄, 문화·체육 및 외국인 지원 등 정착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2025년 기준 김해시는 5개 분야 244개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한 만큼, 사업 간 중복·연계성, 수혜의 형평성, 지역별 효과와 중장기 인구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주요 정책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 이동과 정착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정책과 예산에 환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부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구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은 2026년부터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함

❍ 이에 따라, 김해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구영향평가의 개념과 적용 범위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의 인구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제'의 도입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김해시 인구·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사전검토, 부서별 자가진단, 전문가 평가방식 등 시범 평가를 도입함

❍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류 체계와 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Ⅰ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5~2026년

❍ 공간적 범위 : 김해시 전역

❍ 주요 연구 내용

- 인구영향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검토
- 인구영향평가제 이론 및 정책 동향 분석
- 인구정책 사업 현황 진단
- 인구영향평가 기준 및 지표체계 개발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시범 평가 및 운영체계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및 사례분석

-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 분석
- 김해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 사업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자문

3) 연구 수행 체계

연구목표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		
기초분석 / 모형설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인구구조, 정책 분석	사례조사	평가모형 설계
시범적용 / 제도화	4단계	5단계	6단계
	시범 평가	운영체계 구축	인구정책 환류 과제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Ⅱ 인구영향평가의 개념과 운영 사례

1 | 인구영향평가 개념과 체계

1) 인구영향평가 개념과 필요성

❍ 일반적으로 인구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 구조, 인구이동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는 정책 평가 제도로 정의함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및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 그러므로 인구영향평가는 인구 증가와 같은 정량적 정책 효과가 아닌 인구 변화와 주민 삶의 질, 지역발전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정책관리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인구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정책에 인구 관점을 반영하고,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됨

- 우선 인구 변화는 출산 및 보육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산업, 도시개발 등 다양한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개별 정책의 담당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서 사업의 고유 목적과 성과만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인구영향평가[1]는 분산된 개별 정책을 공통된 인구 관점에서 검토하여, 인구정책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주요 특징으로 첫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음

- 정책 및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입지, 방법 등이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이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1) 최지은 외(2025),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둘째, 단순한 인구 증가 중심이 아닌, 인구구조 개선과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 중심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출생과 전입 등 정량적인 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착, 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 고령자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행정 서비스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셋째, 정책의 형평성, 행정·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환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음

- 정책의 고유 목적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인구 집단별·지역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할 수 있음
- 정책 또는 사업별 목적, 대상, 지원 내용,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 사업 방지,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 등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개선 사항 도출, 정책 고도화, 사후 성과 점검 등 환류 체계 실현이 가능함

❍ 그러므로 인구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고도화를 통해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2) 인구영향평가 체계

❍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 선정, 사업부서 자체평가, 전문가 평가, 개선안 도출, 정책 반영 및 사후 점검이 연계되는 순환적 구조임

-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의 자체평가서 작성, 전문가 검토, 평가보고서 작성, 해당 부서 통보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영향평가는 일회성 평가가 아닌 정책의 수립-시행-평가-개선 등 전 과정에 인구 관점을 반영하는 정책관리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 가운데 인구 규모와 구조, 인구이동 및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함

-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에 포함된 사업, 신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의 인구 관련성, 정책 대상 규모, 영향 범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함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청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저출산, 청년정책 등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평가 시기는 정책의 개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중 평가와 사후평가를 병행함

- 사전평가는 신규 정책 및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되는 인구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성과지표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시행 중 평가는 계속사업의 추진 실적과 정책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음
- 사후평가는 실제 수혜자와 이용 실적, 인구 관련 성과 및 영향을 확인하여 사업의 지속·확대·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표 2-1> 인구영향평가의 기본 체계

단계	평가 시점	핵심내용	결과 활용
평가 대상 선정	연간 계획 수립 시	인구 규모, 구조, 이동 및 주민 생활에 영향이 크다고 기대되는 분야 선정	평가 대상의 구체화
자체평가	정책/사업 확정 전	담당 부서가 인구관련성 및 예상되는 영향 사전 점검	사업 대상/지원 내용 /성과 지표 보완
전문가 평가	수립 및 시행 과정	자체평가 점검, 정책 개선 사항 검토	정책 개선안 도출
정책 반영	사업 시행 중 조정 또는 이후 반영	평가 의견을 정책 내용 및 예산에 반영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
사후 점검	정책, 사업 시행 이후	개선안 이행 여부 확인	환류체계 구축

자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연구자 작성

2 | 국내 인구영향평가 운영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인구영향평가 도입

❍ 국내 인구영향평가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인구이동 및 사회적 증감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음

-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함

❍ 2007년부터 2010년대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인구영향평가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정책 제도로서 한계가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수립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에 한정한 평가 도입을 시도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출산력에 중심을 둔 경제적 분석으로 한정됨

<표 2-2> 국내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추진 연혁

구분	추진배경	주요내용	한계점
1984년~1990년대 초	-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문제 대응 - 개발사업이 수도권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 인구·사회경제 현황,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이동 영향, 인구집중 억제 방안 검토	인구의 사회적 증감과 수도권 집중 억제에 초점
1994년~2000년대	- 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통합하면서 사업이 유발하는 인구·교통·환경 등의 영향을 함께 검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통합 영향평가 체계로 이행	2008년 법 전부개정으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가 통합법에서 제외, 독립적인 인구영향평가는 폐지
2006~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기	- 인구집중 억제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정책 관심이 이동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시범사업이 추진	부처 간 조정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객관적·정량적 기준 마련 한계

구분	추진배경	주요내용	한계점
2016년 이후: 제3차 기본계획 시기	-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제기	인구영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결혼·출산 모형구성, 정책 모의실험 수행	범정부 차원의 상시·의무 평가제도로 정착시키는데 한계
2017년~2020년대: 지방정부 도입	-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인구 감소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경기도 부천시 최초 시행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에서 도입 시행	사업부서의 자체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 의견을 제시함 (권고형 평가) 환류체계 확립 한계

자료) 박진경(202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자 재작성

❍ 2020년대부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제도가 마련됨

- 전국 17개 시도 모두 「인구정책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함
-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가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표 2-3> 주요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 제도 추진 현황

구분	전담 부서/수행 기관	주요 특징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울시 기획조정실	2022~2023년 시범 평가 이후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평가 체계를 구축 중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	사업부서 자체평가, 전문가 검토, 개선보고서 작성, 정책개선 권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공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 운영	연간계획에 따라 자체진단과 전문가 평가를 실시, 운영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자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연구자 작성

2) 주요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 운영 사례

(1)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고 2021년「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

- 인구정책담당관 및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담당 사업부서의 자체진단을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를 시행함
- 자체진단은 해당 사업의 주요 목적 및 특성에 기반하여, 성별·연령·가족·가구형태, 일·가정 양립, 인구 증감 등 다양한 영향을 검토함
- 전문가 평가는 정책의 필요성, 수혜 대상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성과지표, 인구구조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사업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당 사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환류 체계를 구축함

- 평가 결과는 현행 유지, 일부 개선, 전면 개선 등으로 구분되어 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사업부서는 수용 여부와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받음
- 경기도 2025년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75개 사업을 평가하고, 68개 사업(90.6%)에서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됨. 이는 정책사업 간 평가라기보다 성과지표와 사업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냄

◻ 부산광역시

❍ 2020년 인구영향평가 시범 도입 이후 2022년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연구원에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함

-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 선정, 평가지표 개발, 전문가 평가단 구성, 평가 결과 분석 등을 추진함

❍ 2024년 인구영향평가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존 사업은 담당 사업부서 자가진단, 전문가 평가 및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은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평가 주요 항목은 인구정책과의 부합성, 정책 대상과 사업 내용의 적절성,

시민 편의성, 사업성과, 예산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성함

❍ 인구영향평가 결과는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의결하고, 해당 정책 사업의 유지·개선·통합·조정 등에 활용함

- 정책 사업 성과에 대한 서열화가 아닌, 재구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등을 조정하고 차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경상남도

❍ 2025년 인구영향평가 시범 도입 및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인구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함

- 2026년부터 경남연구원의 경남인구전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평가와 연구를 지원하고 경남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주요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사전검토와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정책 사업 시행 후에는 성과평가와 중장기 핵심성과지표를 관리함
- 또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결합하여 정책의 인구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성과를 차년도 계획과 예산에 환류하는 전주기 평가 체계를 계획함

❍ 경상남도는 평가 실적이 축적된 단계는 아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최근에 추진된 사례로 볼 수 있음

<표 2-4>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 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차이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및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등을 평가. 전문가 검토, 평가센터 지원, 개선 권고와 이행 모니터링 실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중심, 평가센터와 대상 공모 등 지원체계를 조례에 규정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평가. 자체진단과 전문가 검토 후 개선 권고·이행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공개	인구정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전담센터 운영을 규정함
경남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인구 증감·구조 변화와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출산·양육·일자리·주거·정주여건 관련 사업 등을 평가	별도 인구영향평가 조례가 없고, 평가는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 평가 지표·시기·방법은 도지사가 정함

자료)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연구자 작성

(2) 기초자치단체

◻ 부천시

❍ 2017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였음

- 기존 출산·보육 중심 인구정책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가정 양립 등으로 확대하여 결혼·출산·정착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평가함
- 인구정책추진단장이 평가를 총괄하고, 담당 사업부서와 인구정책 담당부서가 협력하여 정책의 인구 영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평가 조직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

◻ 광양시

❍ 2017년 '인구영향검토제'를 도입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일부 개념인 사전평가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인구 영향을 검토함

-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조성,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 서비스 사업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 절차는 담당 사업부서의 사전검토, 인구정책 부서의 실무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검토 의견 통보, 반영 여부 결정 및 이행 결과 보고로 이루어짐

3) 소결

❍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서열화가 아닌, 정책의 인구 관련성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에서 전후방 효과를 점검하고, 수혜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담당 사업부서 자가 평가와 전문가 평가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자가 평가는 스스로 개선 과제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대상, 인구수요, 성과지표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는 사업의 유지·폐지 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보다 개선 방향을 제

시하고, 환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인구영향평가 대상 정책 사업의 적정한 선별과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 핵심 인구정책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과의 환류 여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평가 의견이 사업대상 조정, 서비스 접근성 개선, 성과지표 보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평가 의견별 수용 여부, 개선 계획, 반영 시기 등을 작성하고 차년도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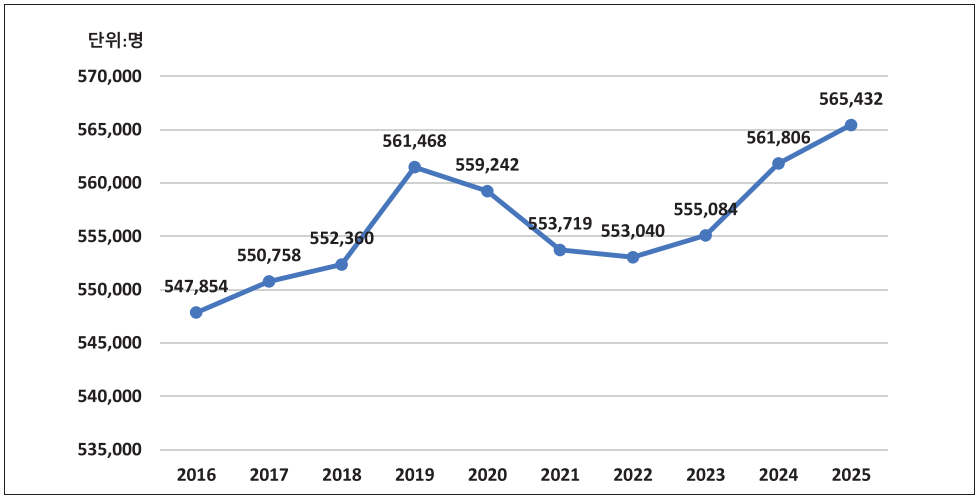
Ⅲ 김해시 인구 변화와 정책 여건

1 | 김해시 인구 변화

1) 인구 규모와 증감 요인

❍ 김해시 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인구 변화는 둔화되고 내국인(주민등록 인구) 인구 감소, 외국인(등록외국인) 증가 추세로 전환됨

- 인구는 2020~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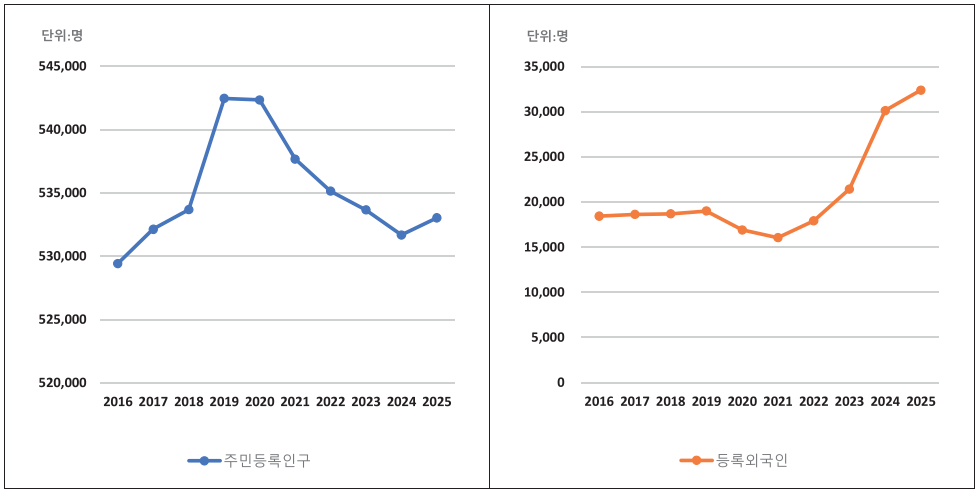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1) 김해시 인구 추이

❍ 김해시 인구 증가추세의 전환은 외국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2]에 따라,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김해시 내국인은 2016년 529,422명에서 2025년 533,035명으로 약 0.7%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2016년 18,432명에서 2025년 32,397명으로 약 75% 증가하였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5,403명)를 포함(2025.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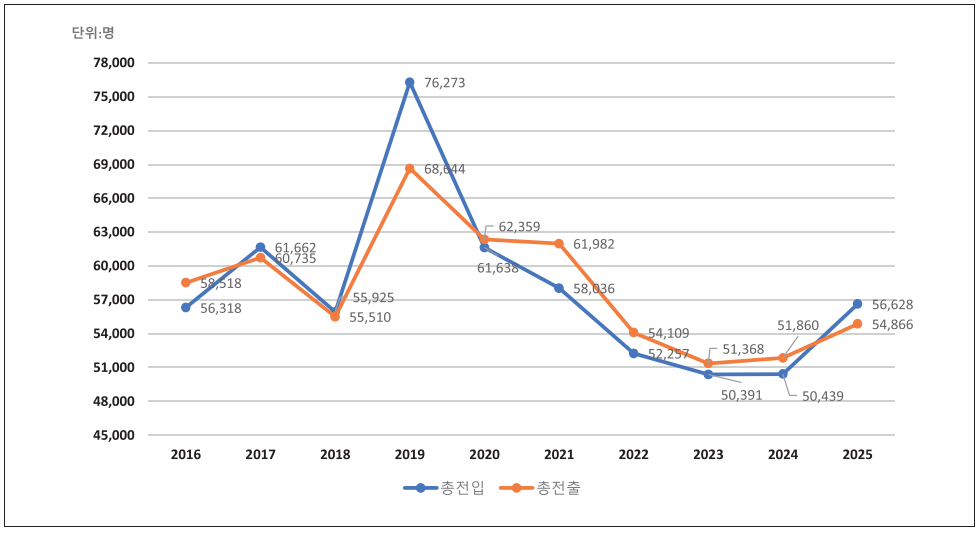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2) 김해시 내국인, 외국인 추이

❍ 또한 김해시 최근 인구 증가는 사회적 이동에서 순유입이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전입인구는 5만 6,628명, 전출인구는 5만 4,866명으로, 순이동(전입-전출)은 1,762명으로 순유입이 나타남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3) 김해시 인구 이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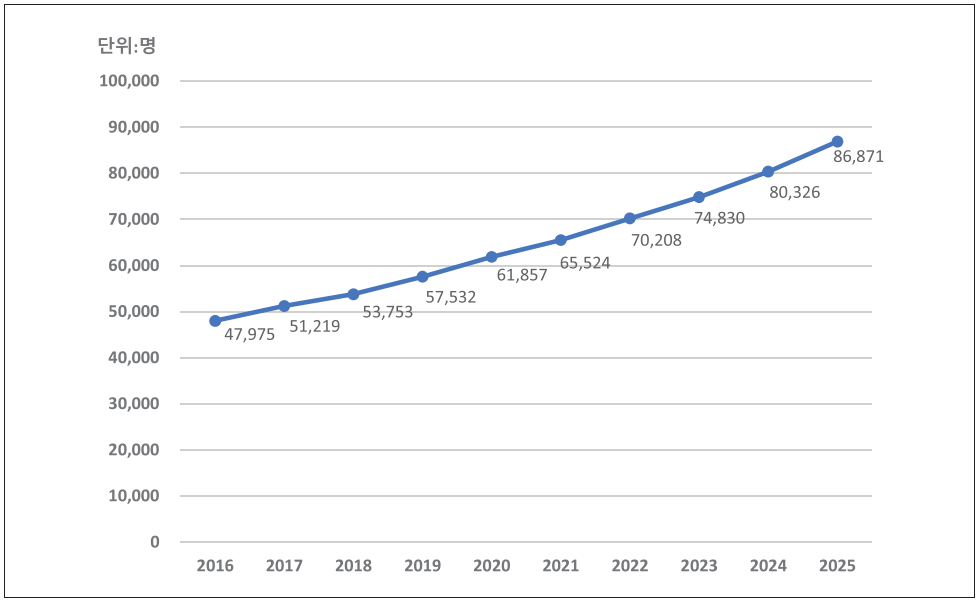
❍ 종합하면 최근 김해시 인구의 증가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인한 외국인 증가, 사회적 순유입에 따른 내국인 소폭 증가로 볼 수 있음

- 외국인의 증가가 전체 증가분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증가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김해시 인구는 내·외국인 구성 및 증가율, 자연 증감, 인구이동 및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인구 구조

❍ 김해시는 2025년 들어서면서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구구조는 고령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2016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7,975명에서 2025년 86,871명으로 약 81.1%가 증가함
- 동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약 9.1%에서 약 1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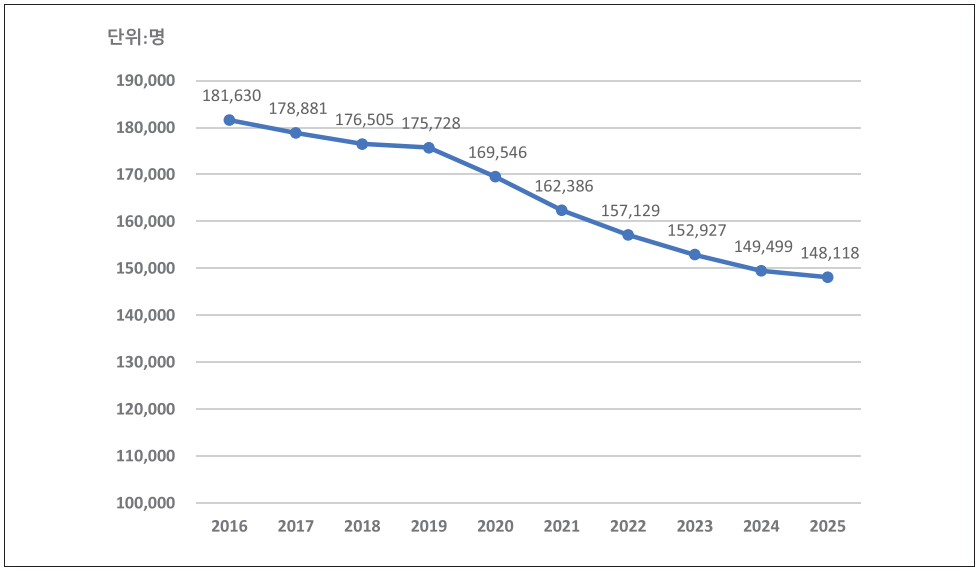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4) 김해시 고령인구(65세 이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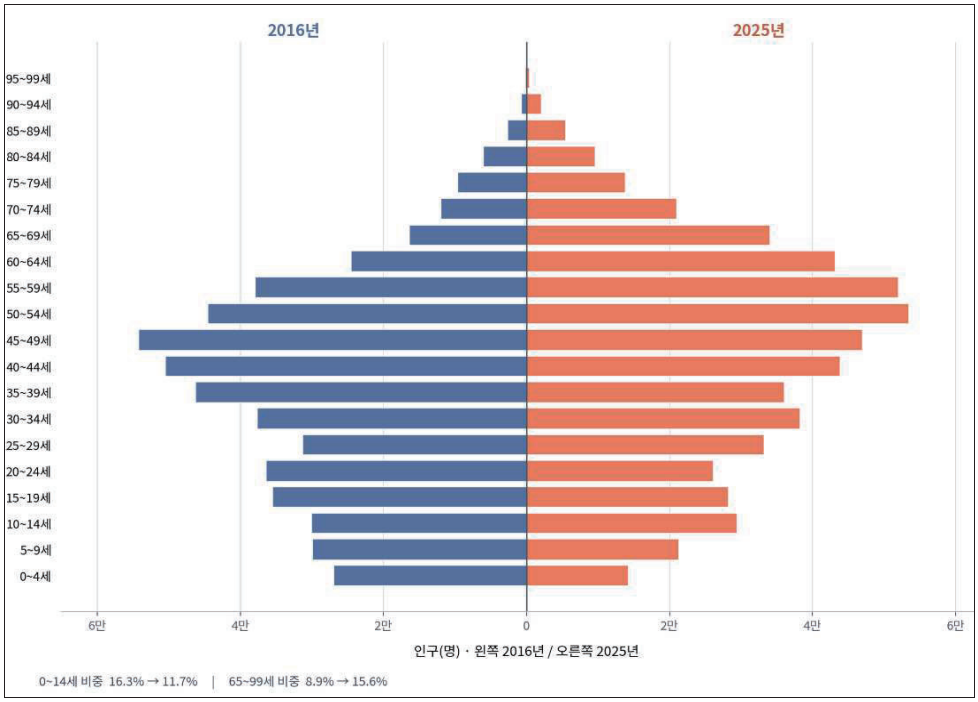
❍ 반면, 청년인구(15~39세)는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생산과 소비 활동, 출생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

- 2016년 청년인구는 181,630명에서 2025년 148,118명으로 약 18.41% 감소함
- 동기간 청년인구 비중은 약 34.3%에서 약 2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5) 김해시 청년인구(15~39세) 추이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생성형 AI GPT 활용 연구자 작성

(그림 3-6) 김해시 연령별 인구구조변화 피라미드

3) 인구이동과 정착 특성

❍ 김해시는 지리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창원특례시와 인접한 광역생활권 도시로서 전입과 전출이 활발함

-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김해시 전입인구는 5만 6,628명, 전출인구는 5만 4,866명으로 1,762명의 순유입이 나타남
- 전입 및 전출 모두 '주택' 사유가 각각 20,620명과 17,946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가족'과 '직업' 사유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사유에서는 전입이 전출보다 2,674명이 많아 인구 순유입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직업과 교육 사유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교육 목적 전출은 전입보다 47.2%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김해시의 인구 유입은 신규 주택 공급과 부산·창원 등 인근 도시와의 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받는 이동 특성이 나타남

-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 현황(2023~2025년)에서 주택과 가족 사유의 순유입은 김해시가 주민의 주거지이자 생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하지만 직업과 교육 사유의 순유출은 구직과 진학 단계에서 지역을 떠나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3-1> 김해시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 현황(2023~2025년)

(단위:명)

전입사유	2023			2024			2025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직업	11,101	14,076	-2,975	11,254	13,768	-2,514	11,083	13,079	-1,996
가족	13,560	10,782	2,778	14,775	11,775	3,000	16,113	12,567	3,546
주택	17,872	15,957	1,915	16,253	15,402	851	20,620	17,946	2,674
교육	2,233	4,631	-2,398	2,200	4,876	-2,676	2,324	4,922	-2,598
주거환경	2,038	2,219	-181	1,873	2,102	-229	2,276	2,371	-95
자연환경	487	592	-105	368	477	-109	431	559	-128
기타	3,100	3,111	-11	3,716	3,460	256	3,781	3,422	359
계	50,391	51,368	-977	50,439	51,860	-1,421	56,628	54,866	1,76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4) 지역별 인구분포와 정책 수요

❍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인구(533,035명)는 주거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

- 북부동(8만 819명)이 가장 많고, 장유3동(7만 2,246명), 장유1동(6만 8,852명), 내외동(6만 7,448명), 진영읍(5만 2,844명) 순으로 나타남
- 북부동, 장유1·3동, 내외동, 진영읍 등 5개 지역의 인구는 총 34만 2,209명으로 김해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64.2%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장유1·2·3동 주민등록인구는 17만 7,769명으로 전체 인구의 33.4%가 거주하고 있어 장유권이 김해시의 주요 인구 집적지로 나타남

❍ 또한 최근 전입한 주민등록인구의 증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 2024년 대비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1,359명 증가하였으나, 19개 읍·면·동 중 장유1동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유1동은 5만 8,557명에서 6만 8,852명으로 1만 295명(17.6%) 증가한 반면,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합계 8,936명이 감소함
- 특히 장유1동의 세대별 인원을 살펴보면, 30세~39세 인구 증가 규모가 전체의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김해시 전체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신규 주거지역의 인구 증가와 원도심·농촌지역의 감소를 구분하여 정책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인구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소년(0~14세)인구 비중은 주촌면 20.0%, 장유3동 18.9%, 진영읍 14.1%, 장유1동 13.7%로 김해시 평균(11.9%)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대동면 51.4%, 생림면 47.6%, 한림면 44.8%, 상동면 41.7%, 진례면 39.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원도심인 회현동 29.4%, 칠산서부동 27.8%, 동상동 25.9%, 부원동 24.5% 등에서도 고령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그러므로 지역별 인구 규모, 증감 추이, 인구구조를 고려한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2 | 인구영향평가 도입 정책 여건 및 과제

1) 인구영향평가 도입 여건

❍ 김해시의 인구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령화, 청년층 유출,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정책의 인구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말 기준 김해시 총인구는 56만 5,432명으로 전년 대비 0.6%(3,626명)가 증가함
- 총인구는 전입(56,628명)이 전출(54,866명)보다 많은 순유입(1,762명)을 보였으나, 20대 인구는 순유출(1,472명)로 나타남
-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총인구 증감만으로는 지역의 인구문제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구 규모뿐 아니라 연령구조, 인구이동, 정착 가능성 및 정책 대상별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평가 체계가 요구됨

❍ 김해시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는 인구정책의 범위에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과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6조는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인구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인구영향평가 대상을 출산·보육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및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김해시는 부시장 직속 전담 조직(인구청년정책관)을 통해, 다수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인구 관련 평가 대상 사업과 행정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함

- 김해시의 2026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결혼·출산 29개 , 양육·교육 86개, 일자리 66개, 정주 환경 114개 및 고령 친화 33개 사업 등 총 328개 산업을 추진 중임
- 정책별 사업계획서, 예산서, 성과계획서 및 추진 실적 등 기존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 자가 진단 추진이 가능함
-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정책 대상별 세부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인구정책의 변화는 김해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에 긍정적인 정책 환경으로 작용함

- 2026년 6월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하고, 인구 관련 정책과 재정 사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자 함
- 경상남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인구정책의 사전검토, 성과평가 및 예산 환류를 포함한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함
- 이에 따라 김해시는 경남도의 평가지표, 운영 지침 및 전문가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평가제도의 중복을 줄이고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음

<표 3-2> 김해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여건 및 필요성

구분	여건	인구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인구구조 변화 /평가 필요성	- 2025년 기준 총인구증가 및 순유입 - 20대 인구 순유출 - 65세 이상 인구 비중 16.5%	총인구 증감, 인구구조, 청년 이동 고령화, 외국인 증가 등 다양한 인구 변화의 평가 필요성 제기
제도적 기반	-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출산·보육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과 관련된 정책을 인구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전담 조직 및 행정 기반	- 인구청년정책관을 중심으로 추진 - 기존 관련 사업 행정 자료 축적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 담당사업부서의 자가진단 가능함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예산·성과지표에 연계 가능함
사업의 다양성	- 2026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결혼, 출산, 양육 등 344개 사업)	평가 대상 사업 충분히 확보 돌봄·보육 분야에서 시범 적용한 후 일자리·주거·청년 등으로 확대가능
정책정보 제공 역량	-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 운영을 통해 정책 정보 제공	분산된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파악 가능함 향후 평가 결과와 사업 정보를 연계·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 가능함
정책 환경	-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인구정책의 범위 확대 - 경상남도 「경남형 인구영향 평가」도입	저출생 대응 중심에서 인구구조·이동·정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커짐 향후 경남도 평가지표·운영지침·전문가 지원 체계와 연계 가능함
인구영향평가 결과 활용	-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사업계획-예산-성과관리)	부서 개선계획,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검토, 이행점검으로 연결 가능함

자료) 연구자 작성

2)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과제

❍ 인구영향평가의 정책적 목적과 제도적 기능의 명확한 정립이 요구됨

- 인구정책[3]은 정책 시행에 따른 성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특히 출생·이동·정착에는 경제·주거·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개별 사업의 인구 효과를 단기간에 구분하여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구영향평가 제도[4]는 평가목적, 대상, 주체, 방법에 따라 결과 활용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즉 단일한 표준모형이 존재하기 어려우며, 자체 점검과 전문가 심층 평가 등 복수의 평가 수단을 결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김해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은 인구정책이 인구구조, 이동·정착, 돌봄부담 및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평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평가 결과는 사업 간 서열화나 사업 존폐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강점, 개선 필요성 및 추가 검토 사항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7조에 평가 대상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평가 대상과 연간 계획 공개를 규정하고, 제9조에 사업부서의 자가진단서 작성과 총괄 부서의 검토 절차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김해시는 인구정책과의 관련성, 사업 규모, 정책 대상, 신규·계속사업 여부, 부서 간 연계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시범 평가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이후 청년·일자리·주거·교육·교통 및 고령 친화 분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반면에 단순 행사나 법정·의무 사업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에는 간이 검토 또는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박진경(202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최지은 외 (2025),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김해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과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 기준[5]에서 지역 여건의 반영 부족, 평가지표의 포괄성 부족, 사업 담당자의 자가 평가 신뢰성 및 평가 결과 환류 미흡 등이 인구영향평가의 주요 한계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김해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인구정책 부합성, 정주 환경 개선성, 시민 체감도 및 정책 효율성 등의 공통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
- 공통 기준에 따라 돌봄·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세부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표별 개념, 판단 근거, 확인 자료, 점수 부여 기준, 우수 및 미흡 사례를 매뉴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담당 사업부서 자가진단은 사업 목표와 정책 대상, 추진 실적 및 내부 개선 가능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 평가는 인구 영향 발생 경로, 정책 수요와의 적합성 및 중장기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사업별로 정책 대상, 기준연도, 목표, 수혜자의 연령·성별·지역별 분포 및 미수혜 사유를 관리하고, 읍면동별 인구 및 가구 자료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 산출지표, 중간 결과지표 및 중장기 인구지표를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주체별 역할과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6조는 인구정책 소관부서가 평가 대상 공모, 평가센터 지원 및 결과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와 제17조에서 평가센터 운영과 공무원·관계기관 종사자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제15조에서 총괄 부서, 평가센터 및 담당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김해시는 인구청년정책관이 연간 평가 계획, 대상 선정, 부서 협의, 전문가 평가 및 결과 환류를 총괄하고, 사업 부서는 자가 평가와 개선 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도입 초기에 별도 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전담 담당자 지정, 외부 전문가 풀 구성,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필요 사업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5) 김세현 외 (2024), 『부산광역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연구』, 부산연구원

Ⅳ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체계 설계

1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기본 방향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정책과 사업이 인구이동과 정착,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

- 단기적인 출생아 수나 총인구 증가 여부만을 평가하기보다 청년층 정착, 고령화 대응,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돌봄 부담 완화 및 생활권별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평가 결과는 사업의 강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함

1) 정책 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심의 평가

❍ 평가를 통한 통제 기능보다 사업부서의 자율적인 정책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핵심으로 해야 함

- 사업 목표, 정책 대상, 지원 방식, 서비스 접근성 및 성과지표가 김해시의 인구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합한지를 검토함
- 평가 과정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대상 확대, 전달체계 개선, 유사 사업 연계 및 성과지표 보완 등 실행가능한 개선 방안 제시가 필요함
- 평가 결과는 종합 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사업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함

❍ 김해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김해시는 일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유출, 고령화, 외국인 증가 및 생활권별 인구구조 차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정책 대상별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문화·복지 및 외국인 지원 등 시민의 정착과 생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평가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해야 함

- 모든 사업에 동일한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통지표와 정책 분야별 세부지표를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전·사후평가와 자가·전문가 평가의 연계

❍ 정책 전 과정에서 인구 영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사후평가를 연계하고, 사업부서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전검토는 신규·변경사업의 정책목표, 대상 및 예상 인구영향 경로를 점검하고, 사후평가는 계속사업의 추진성과, 접근성, 시민 체감도 및 정책 효율성을 검토해야 함
- 사업부서는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자가 진단하고, 전문가는 인구정책과의 부합성, 정주 여건 개선 가능성 및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 해야 함

❍ 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성과관리에 반영되도록 환류 절차의 구축이 중요함

- 평가 결과 통보, 사업부서 의견 수렴, 개선 과제 확정, 개선 계획 수립,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 반영,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구축함

<표 4-1>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기본 방향

기본 방향	주요내용
정책 개선 중심	사업의 서열화보다 강점·한계 진단과 개선과제 도출
지역특성 반영	청년 유출, 고령화, 외국인 증가 및 생활권별 수요 고려
사전·사후 연계	신규·변경사업의 사전검토와 계속사업의 사후평가 병행
단계적 적용 확대	정책 대상별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범위 확대
상호보완적 평가 프로세스 구축	사업 부서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의 역할 구분
환류 체계 구축	개선 계획 수립, 차년도 계획 반영 및 이행 여부 점검

자료) 연구자 작성

2 | 시범 평가 대상 및 적용 범위

1) 시범 평가 대상 선정

❍ 김해시 인구·정책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인구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청년층 유출, 출생아 감소, 고령화 및 가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의 시범 분야는 정책과 인구 변화 간의 영향 경로의 명확성, 시민 체감도, 사업 개선 활용도 등을 고려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단순한 출산 지원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음
- 특히 돌봄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이용 시간, 비용, 접근 거리 및 서비스의 질은 양육 가구가 체감하는 정주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됨
- 돌봄·육아 정책은 출생아 수와 같은 최종 인구지표뿐 아니라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가족생활의 안정 및 지역 정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정책 영역으로도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구정책과의 관련성, 지역의 정책 수요, 평가 자료 확보 가능성, 사업 개선 가능성 및 향후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육아 분야를 선정함

- 본 연구에서는 돌봄·육아 정책의 인구영향 경로를 평가 가설로 설정함
- 가설은 돌봄서비스의 접근성·품질 향상 → 양육에 필요한 시간·비용 부담 완화 → 일·가정 양립 및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 제고 → 양육 가구의 생활 만족도와 정주 여건 개선 → 중장기적인 가족 형성 및 지역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함

❍ 시범 평가 대상 선정에서 해당 분야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 생활 편의와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음

- 인구정책과의 관련성, 지역의 정책 수요, 평가 자료 확보 가능성, 사업 개선 가능성 및 향후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따라서 시범 평가 대상 사업은 아래 5개 사업으로 선정함

<표 4-2>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시범 평가)

구분		주요 내용
1	365 열린 어린이집, 야간연장, 토요, 휴일 보육 운영	야간·휴일 돌봄서비스를 제공으로 돌봄 공백에 대응함
2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 완화와 부모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함
3	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 대상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함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확대	돌봄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 기반의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함
5	다자녀(셋째아 이상)양육 수당 지원	다자녀 가구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추진함

자료) 김해시청, 연구자 재작성

2) 선정 근거

◘ 중앙 정부 인구전략과의 정합성

❍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현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함

- 양육 분야의 주요 과제로 무상교육·보육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 확대,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늘봄학교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2026년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지향점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 세대 간 공존, 지역의 동반성장 및 포용 사회를 제시하고 있음

- 돌봄 과제는 초고령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 체계를 포함하고 있음
- 돌봄을 지역 일자리, 정주 및 생애주기별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함

◘ 보육·양육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취약지역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

고 있음

❍ 보육·양육 정책에서 전달체계의 연계, 보육 정보 활용 및 이용자 편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단순 이용자 수뿐 아니라 접근성, 서비스 연계성, 정책 인지도와 이용자 만족도 점검은 인구영향평가 목적과 부합하고 있음

□ 김해시 제도적 기반 및 실행 가능성

❍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공백 없는 안심돌봄 제공”을 주요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핵심 과제로 제기됨

- 야간·주말 돌봄 부족,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돌봄·보육 정책이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인구 유지와 정주 여건 개선에 직결되는 정책 영역임을 나타냄

❍ 돌봄·육아 사업은 정책 대상과 사업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기존 행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시범 평가 대상에 적합한 것으로 보임

3) 적용 범위

❍ 돌봄·육아 사업 분야의 적용 범위는 출산 지원 전체가 아닌 아동과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또는 양육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설정함

- 시범 평가에서는 돌봄·육아 분야에서 선정한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개별 사업의 우열을 정하지 않음
- 출산·양육 가구가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운영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을 우선 검토함
- 단순 행정,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하고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 전후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함

❍ 사업별 목표와 추진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되 공통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함

3 | 평가 기준 및 세부 지표

1) 평가 기준 구성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의 자가진단과 외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 사업부서 자가진단은 사업계획, 예산, 추진실적 및 이용자 자료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계획 적정성·성과를 점검함
- 전문가 평가는 자가 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외부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검토하는 정성적 평가임

❍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는 사업 간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강점과 한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 결과는 판단이 일치하거나 차이가 발생한 항목을 비교하여 종합 의견을 작성함

2) 사업부서 자가진단 기준 및 세부지표

(1) 사업 기본정보 및 인구정책 관련성

❍ 사업 기본정보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정책 대상 및 인구영향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표 4-3>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인구정책 관련성

구분	세부 내용	작성 목적
사업개요	사업명, 목적, 기간, 지원 근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총사업비, 집행률	사업의 법적·행정적 근거와 추진내용 확인 예산규모와 집행 안정성 확인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수행기관 및 협업부서 / 성과지표, 산출 근거, 연도별 실적	기존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확인
정책영역	결혼, 임신·출산, 양육·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교육, 일자리 등	사업과 인구정책 분야 간 관련성 확인
정책대상	성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정책대상의 범위와 적합성 확인
사업성격	현금·현물 지원,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교육·정보 제공 등	사업의 정책수단과 인구영향 경로 확인

자료) 연구자 작성

(2) 자가진단 기준

❍ 자가진단은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성과 및 종합평가의 네 영역으로 구성함

<표 4-4> 인구영향평가 자가 진단 세부지표

영역	세부지표	주요내용	판단 척도
사업필요성	사업수요	실제 정책수요가 존재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평가	인구통계·실태조사·시민 요구도·민원·대기수요 등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기준	사업대상과 지원조건이 사업목적 및 정책수요에 부합하는지 평가	적합·조정 필요·부적합
	사업규모	전체 정책대상자와 실제 수혜자 수를 비교하여 수혜규모가 적절한지 평가	과다·적정·부족, 전체 대상자 수·수혜자 수
	예산규모	사업목적과 대상규모에 비추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평가	과다·적정·부족, 예산·집행액·집행률
	성과지표	설정된 성과지표가 사업의 인구 관련 성과를 확인하는 데 적절한지 평가	적합·보통·부적합
	이용 접근성	대상자가 사업정보를 쉽게 얻고 시간·거리·비용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	높음·보통·낮음, 신청방법·운영시간·위치·비용 등
사업성과	성과목표 달성도	설정된 성과목표 대비 실제 추진실적을 평가	100% 초과, 100~80%, 80~60%, 60~40%, 40% 이하
	정책 만족도	사업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과 효과에 만족하는지 평가	자체 만족도 조사·이용자 설문·유사 실태조사
	정주환경 개선	돌봄·양육 및 일·가정 양립 등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기여했는지 평가	관련 실적과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판단
종합평가	사업운영 방향	사업의 필요성, 계획 적정성 및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판단	사업확대·현행유지·개선·조정
	부서 종합의견	종합평가 선택 사유,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기술	정성적 서술
	자가진단 척도	높음, 다소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으로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판단	5단계 척도를 적용 판단

자료) 경기도 「2025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인용, 연구자 재작성

인구영향평가 부서 자가진단서				
구 분	부서명		담당자(연락처)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 지원근거 / 지원대상 및 인원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사 업 비 : 백만원(국, 도, 시) 집 행 액 : 백만원(집행률 %) ※ 최근 3년간 집행률 : 수행기관 또는 협업부서 :		
	성과 목표·지표	성과지표 / 산출근거: '25년 목표/실적 '26년 목표/예상실적 :		
	추진상황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자가 진단	문제점			
	개선사항(바라는 점)			

사업 유형 *복수 체크 가능	정책영역	☐ 저출생 ☐ 청년유출 대응 ☐ 생활인구 확대 ☐ 인구구조변화대응 ☐ 기타
	정책분야	☐ 결혼 ☐ 임신·출산 ☐ 양육·보육 ☐ 주거 ☐ 일가정 양립 ☐ 교육 ☐ 일자리 ☐ 창업 ☐ 문화·여가 ☐ 방문·체류 ☐ 외국인
	사업대상	☐ 남성 ☐ 여성
		☐ 영유아(0~5세) ☐ 아동(6~12세) ☐ 청소년(13~18세) ☐ 청년(19~45세) ☐ 중장년(40~64세) ☐ 고령자(65세 이상)
	사업성격	☐ 현금지원 ☐ 현물지원 ☐ 서비스 제공 ☐ 인프라 구축 ☐ 교육/정보제공 ☐ 기타
사업 필요성	사업수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ex. 시민 요구도 실태·현황 조사 결과, 통계 등)*
사업 계획 적정성	자체평가	☐ 높음 ☐ 다소 높음 ☐ 보통 ☐ 다소 낮음 ☐ 낮음
	지원기준	☐ 적합 ☐ 조정 필요 ☐ 부적합 *※ 사업대상 및 조건설정 적정성 여부*
	사업규모	☐ 과다 ☐ 적정 ☐ 부족 *※ 사업대상자 규모 및 수요대비 규모 적정성* - 총 대상자 수 : 수혜자 수 :
	예산규모	☐ 과다 ☐ 적정 ☐ 부족 *※ 사업목적 대비 예산액 적정성*
	성과지표	☐ 적합 ☐ 보통 ☐ 부적합
	이 용 접근성	☐ 높음 ☐ 보통 ☐ 낮음 (해당 사업의 이용 편의성, 정보 획득 방법, 비용부담 정도 등)
사업 성과	자체평가	☐ 높음 ☐ 다소 높음 ☐ 보통 ☐ 다소 낮음 ☐ 낮음
	성과목표 달성도 (2025년)	☐ 100% 초과 ☐ 100~80% ☐ 80~60% ☐ 60~40% ☐ 40% 이하 성과지표 : , 목표대비 실적 : (달성률 : %)
	정책고객 만족도	*(사업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또는 유사 실태조사 결과 등)*
	정주환경 개 선	*(사업을 통해 돌봄,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기여도)*
종합 의견	종합평가	☐ 확 대 ☐ 현행유지 ☐ 개선·조정
	부서의견	*(자체 종합평가 항목 선택사유 기재 또는 사업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 작성)*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4-1) 인구영향평가 부서 자가진단 양식

3) 전문가 평가 기준 및 세부 지표

(1) 전문가 평가의 목적과 역할

❍ 전문가 평가는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가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인구영향 경로와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임

❍ 평가 결과에는 사업의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개선 의견에는 사업 대상·내용·운영 방식·성과지표 등의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함

(2) 전문가 평가 기준

❍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인구정책 부합성, 정주환경 개선성, 시민체감도 및 정책 효율성의 5개 기준을 통해, '평가결과'와 '개선의견'을 구분하여 작성함

<표 4-5> 인구영향평가 전문가 평가 세부지표

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부지표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업의 대응 정도 평가	성별·연령별 인구변화 반영 여부, 주요 정책 대상 변화에 대한 대응, 미래 인구수요의 선제적 반영, 취약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는 계층에 대한 대응
인구정책 부합성	김해시 인구정책 방향과 사업목적 간의 일관성 평가	김해시 인구정책 추진방향과의 연계성, 지역 특성과 정책수요 반영 정도,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의 적정성, 수요 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정주환경 개선성	시민과 가족가구가 김해시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정도 평가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의 정착 지원, 돌봄·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기여, 생활권별 서비스 접근성 개선, 가족생활의 안정성 제고
시민체감도	정책대상이 실제로 사업효과를 체감할 가능성 평가	정책정보의 인지도, 신청과 이용의 편의성, 시간·거리·비용 부담, 서비스 만족도, 정책 사각지대와 이용 장벽,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편익
정책효율성	예산과 행정자원 투입 대비 성과와 사업의 개선 가능성 평가	투입 예산·시간 대비 이용실적과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유사·중복사업 여부,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사업 확대·개선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자료) 경기도 「2025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인용, 연구자 재작성

전문가 인구영향평가 서식

평 가 전문가	성 명		연락처	
	소속 및 직위			
사업명				
종합 의견 (요약)	종합평가	☐ 사업확대	☐ 현행유지	☐ 사업 개선·조정
	1 인구구조변화 대응성			
	2 인구정책 부합성			
	3 정주환경 개선성			
	4 시민체감도			
	5 정책효율성			
	종합의견			
인구구조 변 화 대 응 성	(평가결과)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변화 파급성, 미래 인구구조변화 선제대응성 등 기술* (개선의견)			
인구정책 부합성	(평가결과) *김해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부합성, 지역특성과 정책수요 반영정도, 지원 대상 및 사업규모 적정성 등 기술* (개선의견)			
정주환경 개선성	(평가결과) *청년·신혼부부·가족이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여건 개선효과 기술* (개선의견)			
시 민 체감도	(평가결과)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등 시민의 정책효과 체감정도 기술* (개선의견)			
정 책 효율성	(평가결과) *투입되는 시간·예산대비 산출, 사업추진 결과 실질적 인구증가 기여도 및 사업개선·확대, 타 사업과 연계 활용 가능성 등 기술* (개선의견)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4-2) 인구영향평가 전문가 평가 양식

4) 사업부서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 연계

❍ 사업부서가 제시한 근거자료의 충분성과 객관성을 통해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고려한 인구 변화와 지역 정책수요를 검토함

❍ 성과목표와 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인구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여부를 상호 검토함

❍ 최종 평가결과는 사업확대, 현행유지 또는 개선·조정으로 제시하되, 평가등급이나 사업 간 서열보다 사업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활용함

- 사업 확대는 정책수요와 성과가 확인되고 추가적인 수혜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시함
- 현행유지는 현재의 사업규모와 운영방식이 대체로 적절하지만 일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시함
- 개선·조정은 정책수요에 비해 대상·규모·운영방식·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구조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시함

<표 4-6> 인구영향평가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 연계

자가진단 영역	전문가 평가 연계 내용	종합 검토 내용
사업 수요와 필요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인구정책 부합성	부서가 제시한 수요의 객관성과 실제 인구·정책수요의 일치 여부
지원기준과 사업규모	인구정책 부합성, 시민체감도	지원대상과 수혜규모의 적정성 및 사각지대 발생 여부
예산과 성과지표	정책효율성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인구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여부
이용 접근성	시민체감도, 정주환경 개선성	이용시간·거리·비용·정보 접근성과 생활여건 개선 가능성
목표 달성도와 만족도	시민체감도, 정책효율성	양적 실적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의 일치 여부
정주환경 개선	정주환경 개선성	부서가 제시한 기대효과와 전문가가 판단한 인구영향 경로의 타당성
부서 종합의견	전문가 종합의견	사업확대·유지·개선·조정에 대한 판단과 개선과제 비교

자료) 연구자 작성

V 돌봄·보육 분야 시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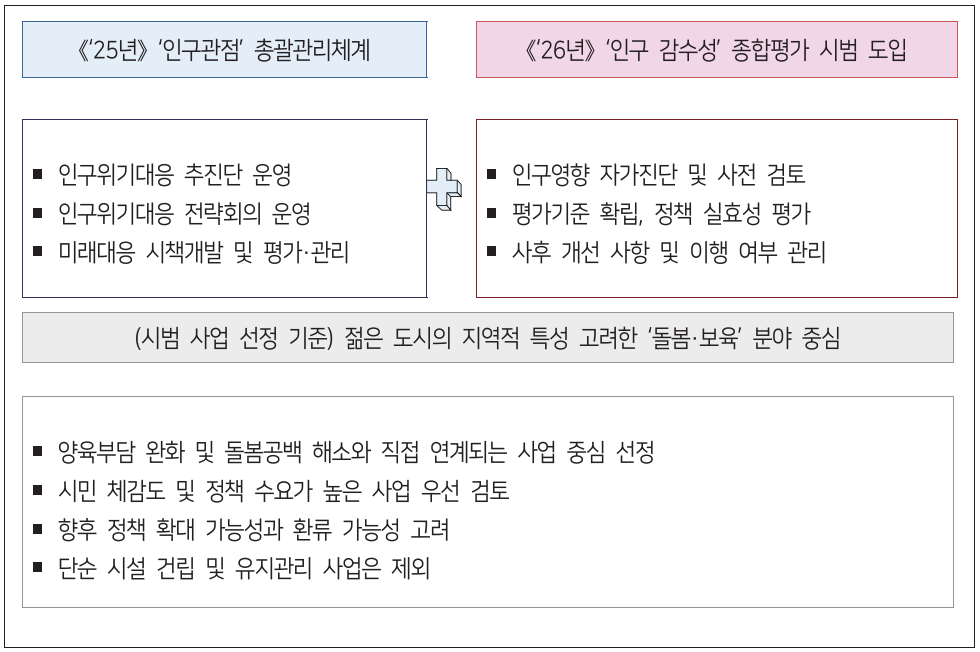
1 | 시범 평가 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및 방향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의 시범 평가 운영은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인구구조와 시민의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임

❍ 시범 평가 운영에서는 정책 사업의 성과 비교 또는 우열 결정이 아니라, 인구정책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시범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사업 개선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환류 체계의 시도와 향후 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음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그림 5-1) 김해형 인구영향 시범 평가 추진 방향

2) 시범 평가 대상

❍ 시범 평가 분야는 정부 정책에 정합성이 크고, 김해시의 인구구조와 정책수요, 평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보육 분야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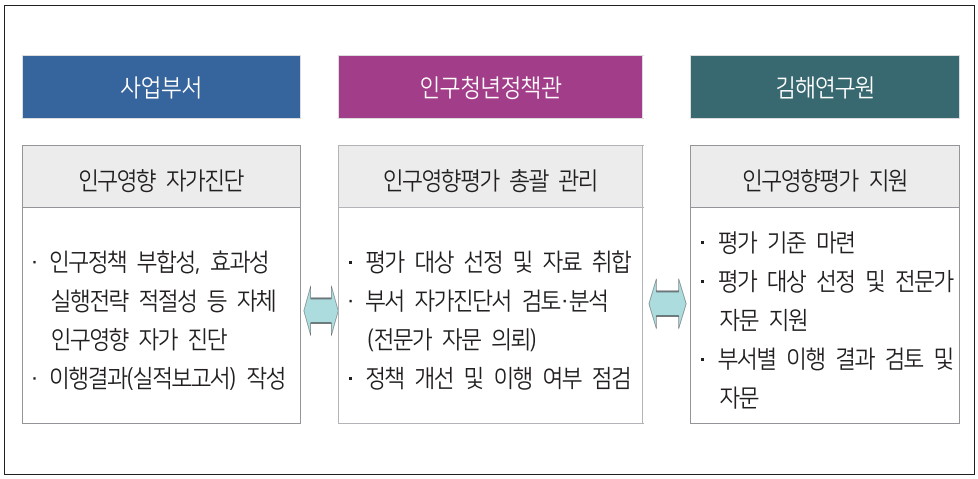
<표 5-1>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시범 평가)

구분		주요 평가 쟁점
1	365 열린 어린이집, 야간연장, 토요, 휴일 보육 운영	시간대별 돌봄수요 대응, 맞벌이 가구의 돌봄공백 해소, 서비스 공급규모와 접근성
2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운영	양육비 부담 완화, 이용 편의성, 부모 참여와 지역 육아지원 거점 기능성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와 대기수요, 본인부담, 취약가구 접근성 및 일·가정 양립 기여도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확대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 이용자 특성, 공동체 기반 돌봄과 생활권별 접근성
5	다자녀(셋째아 이상)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과 기준의 적정성,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 현금지원의 체감 효과와 정책 효율성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연구자 재작성

3) 추진체계

❍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이 시범 평가를 총괄하고, 사업부서의 자가진단, 김해연구원이 평가 기준 마련과 전문가 평가를 지원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함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

(그림 5-2) 김해형 인구영향 시범 평가 추진 체계

2 | 시범 평가 결과

1) 자가 진단 결과

(1) 365 안심 보육 지원사업

❍ 365 안심 보육 지원은 야간·휴일 등 정규 보육시간 외에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맞벌이 가구 통계(2024년 42.5만 가구, 2025년 43.8만 가구)를 근거로 야간·휴일 보육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함
- 부모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으로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36조 및 관련 보육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관내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1만 6,700명임. 2026년 1~6월 수혜자는 1,980명으로 제시됨
- 성과지표인 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98개소로 2025년 목표(88개소) 대비 111.4% 달성하였음
- 2026년 목표는 111개소 이며 실적은 105개소가 예상됨
- 야간·휴일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365 안심 보육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하고 있음
- 사업 필요성, 이용 접근성 및 사업 성과를 모두 '높음'으로 진단하고, 지원기준·사업규모·예산규모와 성과지표도 적정한 것으로 진단함

❍ 담당부서는 야간·휴일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근거로 '현행 유지'를 제시함

- 다만 시민의 사업 인지도가 낮으면 실제 수요가 있는 가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홍보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함

<표 5-2> 365 안심 보육 지원사업 자가 진단 결과

구분	진단 내용	주요 평가 쟁점
사업 수요 / 필요성	높음	맞벌이 가구 증가와 다양한 근로형태로 야간·휴일 보육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지원기준	적합	야간·휴일 등 정규 보육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지원
사업 및 예산규모	적정	대상자 16,700명, 2026년 1~6월 수혜자 1,980명, 사업비 2,070백만 원
성과지표	적합	365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성과지표로 활용
이용 접근성	높음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
사업성과	높음	2025년 목표 88개소 대비 98개소 운영, 목표 달성률 111.4%
시민체감/정주효과	긍정적	돌봄공백과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
문제점	인지도	사업 인지도가 낮을 경우 필요한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부서 개선의견	홍보강화	사업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
종합평가	현행유지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가 인정되므로 현행 수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

자료) 부서별 자가진단표, 연구자 재작성

(2)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대여와 놀이공간 제공, 부모·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육아지원 기반을 제공함

- 2025년 이용 실적은 1만 4,898명으로 목표(4,920명) 대비 302.8% 달성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에 근거하여, 관내 지역주민 중 만0~7세 아동 또는 만12세 이하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대상 1만 7,233명 중 1만 4,898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진단함

- 사업 필요성, 이용 접근성과 사업성과는 '높음'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원기준·사업규모와 예산규모도 적정한 것으로 진단함
- 다만 성과지표는 이용자 수에 한정되어 있어 '보통'으로 진단함

❍ 이용자 증가에 비해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하고 인건비 예산에 제약이 있어 종합평가는 '개선·조정'으로 제시함

- 담당부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인건비 집행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함

<표 5-3>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지원사업 자가 진단 결과

구분	진단 내용	주요 평가 쟁점
사업 수요 / 필요성	높음	장난감 대여를 통한 양육비 절감과 영유아 놀이활동 지원에 대한 시민수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
지원기준	적합	만 0~7세 아동과 만 12세 이하 발달지연 아동이 있는 관내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사업 및 예산규모	적정	대상자 17,233명, 2025년 이용자 14,898명, 사업비 100백만원
성과지표	보통	이용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서비스 품질과 양육부담 완화 효과 측정에는 한계
이용 접근성	높음	지역 복지시설에 위치하여 영유아 양육가정과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과	높음	2025년 목표 4,920명 대비 14,898명 이용, 목표달성률 302.8%
시민체감/정주효과	긍정적	장난감 대여와 문화·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비 부담 완화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문제점	운영인력	이용자와 업무량 증가에도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하고 인건비 집행비율에 제약이 있음
부서 개선의견	인건비 개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집행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종합평가	개선 조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운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자료) 부서별 자가진단표, 연구자 재작성

(3)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가구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950명에서 2025년 1,711명으로 이용 아동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확인됨
- 2025년 성과는 1,711명의 아동에게 총 14만 5,38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목표 1,700명 대비 100.6%의 성과를 달성함

❍ 사업성과는 '높음'으로 평가, 사업 필요성은 '다소 높음', 이용 접근성은 '보통'으로 진단함

- 서비스 수요 초과로 인한 대기 누적과 지역별 공급 편차가 확인됨

<표 5-4>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가 진단 결과

구분	진단 내용	주요 평가 쟁점
사업 수요 / 필요성	다소 높음	이용아동이 2023년 950명에서 2025년 1,711명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확인됨
지원기준	적합	맞벌이·한부모가구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및 예산규모	적정	2025년 대상 1,700명 대비 1,711명이 이용하였으며, 2026년 사업비는 7,893백만 원
성과지표	적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이용 접근성	보통	아이돌보미의 지역별 공급 편차와 교통 불편으로 읍·면지역은 동지역보다 연계가 어려움
사업성과	높음	2025년 목표 1,700명 대비 1,711명 이용, 목표달성률 100.6%
시민체감/정주효과	긍정적	양육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나 만족도 조사는 평가 시점 이후 실시 예정
문제점	지역 격차 대기 누적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읍·면지역의 서비스 연계가 어려움
부서 개선의견	공급확대	복수 수행기관 설치와 아이돌보미 확충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
종합평가	현행유지	사업 확대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 등 제약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

자료) 부서별 자가진단표, 연구자 재작성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 돌봄 공간과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간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사업임

- 이용자는 2023년 3개소 1만 8,526명에서 2025년 4개소 4만 4,94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실적은 목표(32,901명) 대비 136.6% 달성함
- 사업성과는 '높음', 사업 필요성은 '다소 높음'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원기준, 사업규모, 예산규모와 성과지표는 적정하다고 진단함

❍ 시설별 입지와 지역·인구 특성에 따라 이용실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접근성은 '보통'으로 진단함

- 예산과 공간 확보의 제약을 고려하여 우선 5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내실화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하고자 함

<표 5-5>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자가 진단 결과

구분	진단 내용	주요 평가 쟁점
사업 수요 / 필요성	다소 높음	이용자가 2023년 18,526명에서 2025년 44,945명으로 증가, 정책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됨
지원기준	적합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이용 가능
사업 및 예산규모	적정	2026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9백만 원
성과지표	적합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의 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활용
이용 접근성	보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주민은 이용에 불편이 있음
사업성과	높음	2025년 목표 32,901명 대비 44,945명 이용, 목표달성률 136.6%
시민체감/정주효과	긍정적	돌봄공간과 품앗이 활동을 통해 양육친화적 환경과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나 전체 만족도 조사는 미실시
문제점	시설 편차 재원 부담	호점별 이용실적 차이가 존재하며 신규 5호점은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운영
부서 개선의견	운영 내실화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
종합평가	현행유지	예산과 공간 확보의 제약을 고려하여 5개소의 안정적 운영 후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자료) 부서별 자가진단표, 연구자 재작성

(5) 셋째아 이상 양육 수당 지원

❍ 김해시에 거주하는 취학 전 셋째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연평균 신청자는 1,508명이며, 2026년 2분기 기준 대상자 1,400명 중 1,200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제시됨
- 2025년 지급목표 16억 5천만 원 대비 1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 달성률은 약 99.8%로 나타남

❍ 지원기준, 수혜규모와 예산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사업 필요성·성과지표·이용 접근성과 사업성과는 모두 '보통'으로 진단함

-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생·전입신고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함

<표 5-6> 셋째아 이상 양육 수당 지원사업 자가 진단 결과

구분	진단 내용	주요 평가 쟁점
사업 수요 / 필요성	보통	연평균 약 1,508명이 신청하고 있어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
지원기준	적합	김해시에 거주하는 취학 전 6세 미만의 셋째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
사업 및 예산규모	적정	2026년 2분기 기준 대상자 1,400명 중 1,200명이 수혜, 사업비 1,680백만 원
성과지표	보통	지급금액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양육부담 완화와 정책효과 측정에는 한계
이용 접근성	보통	전화·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나 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절차를 모르는 경우 미수혜 가능
사업성과	보통	2025년 목표 1,650백만 원 대비 1,647백만 원 집행, 목표달성률 99.8%
시민체감/정주효과	근거자료 부족	만족도와 정주환경 개선 항목에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문제점	미인지 문제	지원대상임에도 사업 인지 부족이나 신청절차 미숙지로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
부서 개선의견	선제적 안내	출생·전입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안내할 필요
종합평가	현행유지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수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

자료) 부서별 자가진단표, 연구자 재작성

2) 전문가 평가

(1) 365 안심 보육 지원사업

❍ 야간·휴일·토요일 등 정규 보육 시간 외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맞벌이·교대근무·자영업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함

- 김해시의 '공백 없는 안심돌봄'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기존 보육 체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은 인정됨
- 다만 성과지표가 제공기관 수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이용자 수, 이용건수, 수요 충족률 및 돌봄 공백 해소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읍·면 지역의 제공기관 부족, 시민 인지도 및 홍보 부족, 이용자 만족도 자료 부재도 공통적인 개선 사항으로 제시됨

❍ 현행 사업의 기본 체계는 유지하되, 이용 수요와 지역별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공기관을 적정 배치할 필요가 있음. 실제 이용자·이용건 수, 미충족 수요 및 만족도를 성과지표에 포함하고 수요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측면에서는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와 맞벌이·한부모·교대근무 가구의 변화, 요일·시간대별 돌봄 수요를 분석하여 제공기관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 부합성 측면에서는 사업 목표를 단순 보육시설 확대가 아닌 돌봄 공백 해소, 부모의 고용 유지 및 가족 정착 지원으로 구체화해야 함
- 정주 환경 개선성 측면에서는 신규 공동주택·산업단지 인접 지역과 읍·면 지역 등 수요 및 접근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관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체감도 측면에서는 이용자 만족도와 미이용 사유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관별 서비스 편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성과지표를 '제공기관 수'와 '실이용 아동 수·이용시간'으로 구분하고, 아동 1인당·시간당 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이용 대상 및 기능의 중복·대체 관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5-7> 365 안심 보육 지원사업 전문가 개선 의견

평가항목	개선 의견	주요 점검지표(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와 맞벌이·한부모·교대근무 가구의 변화, 요일·시간대별 돌봄수요를 분석하여 제공기관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아동 이용실적과 다국어 안내 여부도 별도로 관리해야 함	대상아동 대비 수혜율, 이용아동 연령, 가구유형, 시간대별 이용건수, 외국인 아동 이용률
인구정책 부합성	사업목표를 단순 보육시설 확대에서 돌봄 공백 해소, 부모의 고용 유지 및 가족 정착 지원으로 구체화해야 함. 청년·신혼부부 정착, 여성 경력단절 예방, 산업단지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신혼·맞벌이 가구 도달률, 미충족 수요, 고용 유지 여부, 연계사업 이용률
정주환경 개선성	제공기관 수보다 실제 야간·휴일 이용이 발생하는 기관의 비율을 점검하고, 신규 공동주택·산업단지 인접지역과 읍·면지역 등 수요 및 접근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관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실제 운영기관 비율, 권역별 이용률, 이용가구 취업 형태, 양육여건 개선도, 지속 거주 의향
시민 체감도	출생·전입신고, 어린이집 입소, 가족센터 및 사업장 등을 활용한 대상자 중심 홍보가 필요함. 이용자 만족도와 미이용 사유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관별 서비스 편차를 점검해야 함	인지도, 이용자 만족도, 미이용 사유, 기관별 만족도, 재이용 의향
정책 효율성	성과지표를 '제공기관 수'와 '실이용 아동 수·이용시간'으로 구분하고, 아동 1인당·시간당 비용을 산출해야 함.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이용대상 및 기능의 중복·대체 관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공기관 수, 실이용자 수, 이용시간, 수요 충족률, 아동·시간당 비용

자료) 전문가 평가 자료, 연구자 재작성

(2)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 장난감 대여와 놀이공간·가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육아지원 기반을 확충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평가함

- 이용 실적과 만족도가 높고,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용자 증가에 비해 전담 인력과 운영체계가 충분하지 않고, 1개 거점 중심 운영으로 장유권과 읍·면지역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실적 산정기준과 중복 집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즉각적인 시설 확대보다 실적 산정기준 통일, 전담 인력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이용권역 분석을 우선할 필요가 있음

❍ 운영체계를 정비한 후 미이용·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분소 설치 등 선택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측면에서는 영유아 연령, 부모 연령, 가구유형, 신규·반복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수요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 부합성 측면에서는 육아 상담, 부모 교육, 가족 프로그램과 지역 돌봄 자원을 연결하는 육아 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어린이집·가족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주 환경 개선성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이용권역을 분석하여 접근성 편중 확인이 필수임. 또한 장유권·읍면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대여, 소규모 분소, 무인반납함 및 공동육아나눔터 연계 대여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체감도 측면에서는 이용 증가가 장난감 품질·위생, 예약 및 대기시간 등 편의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고 대여 회전율, 재이용률과 서비스별 실적을 관리하며, 이용 증가에 맞게 인력·인건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5-8>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 전문가 개선 의견

평가항목	개선 의견	주요 점검지표(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영유아 연령, 부모 연령, 가구유형, 신규·반복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수요 변화를 파악해야 함. 발달지연·장애아동, 취약가구 및 외국인 가정의 이용실적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실이용자 수, 연령·가구별 이용률, 신규·재이용률, 취약계층 이용률
인구정책 부합성	사업을 장난감 대여시설에서 육아상담, 부모교육, 가족 프로그램과 지역 돌봄자원을 연결하는 육아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해야 함.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어린이집·가족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계 프로그램 수, 상담·교육 참여자, 서비스 연계율
정주환경 개선성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이용권역을 분석하여 접근성 편중을 확인하고, 장유권·읍면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대여, 소규모 분소, 무인반납함 및 공동육아나눔터 연계 대여방식을 검토해야 함	읍·면·동별 이용자, 평균 이동거리, 취약지역 이용률, 분산대여 실적
시민 체감도	이용 증가가 장난감 품질·위생, 예약 편의성 및 대기시간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함. 부모가 아동을 동반한 상태에서도 대여·반납이 편리하도록 이용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만족도, 대기시간, 예약 성공률, 운영시간 만족도, 장난감 상태·위생 만족도
정책 효율성	자가진단서의 1만 4,898명과 사업개요서의 3,972명 등 서로 다른 실적의 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함.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고 대여 회전율, 재이용률과 서비스별 실적을 관리하며, 이용 증가에 맞게 인력·인건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실이용자·연인원, 대여건수, 대여 회전율, 재이용률, 이용자당 비용

자료) 전문가 평가 자료, 연구자 재작성

(3) 아이돌봄 지원사업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에 방문형 돌봄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과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에 직접 기여하는 핵심사업으로 평가하고, 사업확대 의견이 가장 많음

- 이용 아동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기 가구 누적 현황은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됨
- 특히 읍·면 지역은 아이돌보미 부족과 이동거리 문제로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 아이돌보미 추가 확보뿐 아니라 권역별 배치, 매칭 방식 개선, 복수 수행기관 운영 및 대기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성과 지표 측정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됨

❍ 사업 확대 필요성이 가장 명확한 사업임. 다만 단순한 예산 증액보다 아이돌보미 확보, 읍·면지역 공급 확대, 권역별 매칭 효율화 및 복수 수행기관 운영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측면에서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장애아동·외국인 가정의 변화와 연령별 이용 시간을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 부합성 측면에서는 대기가구와 대기기간을 근거로 사업 규모의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주 환경 개선성 측면에서는 읍·면·외곽지역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나 활동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별 공급 격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용·대기가구의 양육 부담, 부모 고용 유지 및 지속 거주 의향을 조사하여 정착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체감도 측면에서는 아이돌보미 확충으로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청부터 연계까지의 절차와 대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성과지표를 서비스 연계 건수로 통일하고 대기기간·권역별 매칭률·지속 이용률 등을 보조 지표로 관리해야 함. 또한 지역·시간대별 인력 배치, 복수 수행기관 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9>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문가 개선 의견

평가항목	개선 의견	주요 점검지표(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아동인구뿐 아니라 맞벌이·한부모·다자녀·장애아동·외국인 가정의 변화와 연령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해야 함. 돌봄 공백 위험이 높은 가구의 우선연계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상아동 대비 수혜율, 가구유형별 이용·대기자, 미연계 건수, 적시 제공률
인구정책 부합성	대기가구와 대기기간을 근거로 사업규모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공급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읍·면지역 교통비, 야간·긴급돌봄 가산지원 및 다자녀가구 우선연계 등 김해형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기가구, 평균 대기기간, 긴급돌봄 연계율, 취약가구 우선연계율
정주환경 개선성	읍·면·외곽지역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나 활동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별 공급 격차를 완화해야 함. 이용·대기가구의 양육 부담, 부모 고용 유지 및 지속 거주 의향을 조사하여 정착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권역별 매칭률, 대기 포기·신청 취소, 고용 유지율, 양육 부담 변화, 거주 의향
시민 체감도	아이돌보미를 확충하여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청부터 연계까지의 절차와 대기현황을 투명하게 안내해야 함. 이용가구와 대기가구를 구분한 만족도 조사 및 아이돌보미 전문성 관리도 필요함	대기기간, 민원·포기 건수, 이용자·대기자 만족도, 돌보미 교육실적
정책 효율성	성과지표를 서비스 연계건수로 통일하고 대기기간·권역별 매칭률·지속이용률을 보조지표로 관리해야 함. 지역·시간대별 인력 배치, 복수 수행기관 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계건수, 연계율, 권역별 매칭률, 지속이용률, 돌보미 1인당 서비스량

자료) 전문가 평가 자료, 연구자 재작성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 공간, 부모·자녀 프로그램과 품앗이 활동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으로서 정책 방향과 성과가 확인됨

- 이용자 수와 품앗이 돌봄공동체 참여가 증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돌봄 수요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호점별 이용실적과 시설 환경의 차이, 읍·면 및 미설치 지역의 접근성 부족, 전체 이용자 만족도 자료 부재가 주요 문제로 제시됨

❍ 일률적인 시설 확대보다 호점별 이용 실적과 지역별 아동 인구·돌봄수요·접근성을 분석하여 기능과 자원을 재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측면에서는 사업 대상을 영유아·아동과 보호자로 명확히 하고 실인원 기준 이용자 집계 방식을 도입해야 함. 또한 연령·가구·지역별 수요와 품앗이 그룹의 형성·지속 여부를 관리하여 공동육아 수요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 부합성 측면에서는 공간 제공, 프로그램, 품앗이 돌봄 및 전입가구 정착지원 기능을 구분하고 기능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함. 시설 확충은 단순 개소 수가 아니라 권역별 서비스 공백을 근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정주 환경 개선성 측면에서는 호점별 이용 편차를 위치·교통·운영시간·프로그램·인지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신규 시설은 미설치·접근 취약지역을 우선하고, 이용 가구의 양육 부담과 지속 거주 의향을 통해 정주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체감도 측면에서는 호점별 접근성, 시설 안전·청결, 운영시간, 프로그램, 부모 교류 효과 등을 포함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용이 저조한 호점은 프로그램·운영시간·홍보와 예산 배분을 조정하고, 신규 시설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5-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전문가 개선 의견

평가항목	개선 의견	주요 점검지표(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사업대상을 영유아·아동과 보호자로 명확히 하고 실인원 기준 이용자 집계를 도입해야 함. 연령·가구·지역별 수요와 품앗이 그룹의 형성·지속 여부를 관리하여 공동육아 수요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실이용자, 신규 부모 참여율, 품앗이 그룹 수·지속률, 프로그램 재참여율
인구정책 부합성	공간 제공, 프로그램, 품앗이 돌봄 및 전입가구 정착지원 기능을 구분하고 기능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함. 시설 확충은 단순 개소 수가 아니라 권역별 서비스 공백을 근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공간 이용률, 프로그램 참여율, 품앗이 참여가구, 미설치권역 수요
정주환경 개선성	호점별 이용 편차를 위치·교통·운영시간·프로그램·인지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함. 신규 시설은 미설치·접근취약지역을 우선하고, 이용가구의 양육부담과 지속 거주 의향을 통해 정주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호점별 이용률, 권역별 접근시간, 양육부담 변화, 품앗이 지속률, 거주 의향
시민 체감도	호점별 접근성, 시설 안전·청결, 운영시간, 프로그램, 부모 교류효과 등을 포함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점심시간 운영 여부 등 실제 양육가구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함	호점별 만족도, 이용빈도, 재이용률, 프로그램 참여율, 운영시간 만족도
정책 효율성	사업비와 실적자료를 일치시키고 호점당·이용자당 비용을 산출해야 함. 이용이 저조한 호점은 프로그램·운영시간·홍보와 예산배분을 조정하고, 신규 시설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호점별 비용·이용실적, 이용자당 비용, 목표 달성률, 국비 확보액

자료) 전문가 평가 자료, 연구자 재작성

(5) 셋째아 이상 양육 수당 지원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직접 완화하고 수혜가구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은 인정됨

- 지급 금액 중심의 성과지표는 양육 부담 완화, 만족도, 추가 출산 의향 및 정주 의향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특히 월 10만 원의 현금지원이 셋째아 출산 결정이나 지역 정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 신청주의에 따른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 출생·전입신고 단계에서의 자동 안내와 행정정보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일부는 시비 부담과 셋째아 중심 지원 구조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급여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존 수혜 가구의 정책 체감도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사업을 유지하되, 사업 목적을 '출산장려'보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측면에서는 출산 순위별 출생아와 대상·수혜자 추이를 분석하여 셋째아 중심 지원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 부합성 측면에서는 지원 대상·수준·지급 시점이 김해시의 저출생 및 다자녀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함. 특히 인접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조정이나 돌봄서비스 이용권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주 환경 개선성 측면에서는 수혜 가구의 주거·돌봄·교육·교통·문화 수요와 지속 거주 의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체감도 측면에서는 출생·전입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최소화해야 함. 또한 실제 수급률과 신청 누락률을 관리하고 수혜 가구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혜율, 미신청 가구 발굴률, 양육 부담 완화, 만족도 및 정주 의향 등 효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5-11> 셋째아 이상 양육 수당 지원사업 전문가 개선 의견

평가항목	개선 의견	주요 점검지표(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사업목적을 출산율 제고보다 다자녀가구의 지속적인 양육 부담 완화와 정착 지원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출산순위별 출생아와 대상·수혜자 추이를 분석하여 셋째아 중심 지원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출산순위별 출생아, 대상·수혜아동, 수혜율, 양육 부담 완화도
인구정책 부합성	지원대상·수준·지급시점이 김해시의 저출생 및 다자녀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함. 인접 지자체와 비교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범위 조정이나 현금 일부의 돌봄서비스 이용권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원수준 비교, 재정 부담, 대상범위별 소요예산, 연계서비스 이용률
정주환경 개선성	현금지원만으로 정주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수혜가구의 주거·돌봄·교육·교통·문화 수요와 지속 거주 의향을 조사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돌봄 우선연계, 공공시설 감면 및 주거정보를 포함한 정주지원 패키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생활수요, 양육비 부담, 계속 거주 의향, 이주 고려 사유, 연계서비스 이용률
시민 체감도	출생·전입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를 최소화해야 함. 추정 대상자 대비 실제 수급률과 신청 누락률을 관리하고 수혜가구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수급률, 신청 누락률, 자동안내율, 만족도, 지원 도움 정도
정책 효율성	지급금액은 집행지표이므로 수혜율, 미신청 가구 발굴률, 양육 부담 완화, 만족도 및 정주 의향 등 효과지표로 개편해야 함. 현금지원과 돌봄·보육서비스 연계방식의 비용 및 효과를 비교하여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혜율, 가구당 비용, 부담 완화도, 만족도, 정주 의향, 서비스 연계율

자료) 전문가 평가 자료, 연구자 재작성

3) 종합 결과

❍ 자가 진단과 전문가 평가에서 5개 사업 모두 김해시의 저출생 대응과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업 폐지 의견은 제시되지 않음

❍ 다만 공통적인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기관 수·이용자 수·지급액 등 투입·산출지표를 수요 충족률, 대기기간, 양육 부담 완화, 만족도 및 정주 의향 등 효과지표로 개편이 필요함
- 서비스 접근성 및 지역 간 공급 격차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이용자 증가에 대응한 돌봄 인력과 운영 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함
- 보육·돌봄 사업을 청년고용, 주거, 교통 및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정착지원 효과 강화에 집중하고 이용자뿐 아니라 미이용자·대기자의 사유와 정책수요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12> 인구영향평가 전문가 결과

구분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5	종합
365안심보육지원	개선·조정	현행유지	사업 확대	현행 유지	사업 확대	확대/유지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운영	개선·조정	개선·조정	개선·조정	개선·조정	사업 확대	개선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 확대	사업 확대	사업 확대	사업 확대	개선·조정	확대
공동육아나눔터운영	현행 유지	개선·조정	개선·조정	현행 유지	개선·조정	개선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개선·조정	개선·조정	현행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유지

자료) 전문가 평가 자료, 연구자 재작성

❍ 또한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른 관련 정책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표 5-13> 인구영향평가 종합 결과 및 관련 근거

구분	종합 결과	관련 근거
365안심보육지원	확대/유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보육 활성화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함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은 시간제보육 등 수요자 맞춤형 양육지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운영	개선	- 「영유아보육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양육지원 서비스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현, 인구전략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와 돌봄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공동육아나눔터운영	개선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정보 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안내」는 공간 제공, 돌봄품앗이, 부모교육, 장난감·육아물품 공유 및 지역자원 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제시함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유지	- 「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재정 영향 및 지역적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자료) 전문가 평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자 재작성

Ⅵ 인구영향평가 운영체계 구축 방안

1 | 운영체계 구축 방향

❍ 「인구전략기본법」 제41조 관련하여, 김해시는 인구정책 평가와 정책 조정이 연계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구영향평가는 별도의 일회성 절차가 아닌, 인구정책 시행계획, 주요 업무계획, 예산편성, 성과계획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과 연계해야 함

-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는 5년 단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6조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구영향평가 운영의 기본적인 제도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사업 또는 부서의 성과에 대한 서열화 중심이 아니라, 정책사업이 인구구조 변화와 시민의 정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음

- 평가 결과는 정책대상 조정, 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별 공급 격차 완화, 유사·중복사업 연계, 성과지표 보완 등 구체적인 사업 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효과는 단기간에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용자 수와 집행률뿐 아니라 돌봄 공백 감소, 양육 부담 경감, 청년 정착, 생활 편의 개선 등 중장기 성과를 함께 관리해야 함

❍ 운영 초기에는 평가 자료 확보가 가능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범 평가 결과와 부서의 행정부담을 검토하여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

- 신규사업과 주요 변경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이전에 사전 검토 전략이 필요함
- 일정 기간 이상 추진된 계속사업은 사후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과 정책효

과를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함

- 소액·단순 집행사업, 법정 의무사업,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사업 등은 검토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광범위한 사업을 평가하기보다 정책 분야별 순환 평가를 적용하여 부서의 부담과 평가의 실효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자료) 생성형 AI GPT 활용 연구자 작성

(그림 6-1) 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

2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추진 체계

1) 인구청년정책관의 총괄 기능 강화

❍ 인구영향평가의 총괄 부서는 현재 전담 부서로 운영 중인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인구영향평가 컨트롤타워로서 연간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 후보 사업 조사 및 선정, 자가진단 및 사업부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이후에는 평가 결과 통보, 부서 의견 수렴 및 개선 과제 확정, 개선 과제의 이행 여부 점검 등으로 환류 체계를 유지함
- 또한 인구영향평가의 체계와 효율성을 위하여, 인구청년정책관은 평가를 총괄하고 사업의 내용과 개선 계획은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으로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직에서 인구영향평가 총괄기능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일자리·주거·교통·교육·복지·외국인·문화 등에 다양한 부서에 분산된 정책의 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와 제8조에는, 부시장 중심의 인구정책위원회를 두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위원회를 평가 심의 등 조정 기구로 활용할 수도 있음
- 평가 대상과 기능이 확대되는 단계에서 「김해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인구영향평가 주체와 평가방법 및 결과 반영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가 평가 및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김해시 사업부서의 정책 이해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를 결합하는 이원적 평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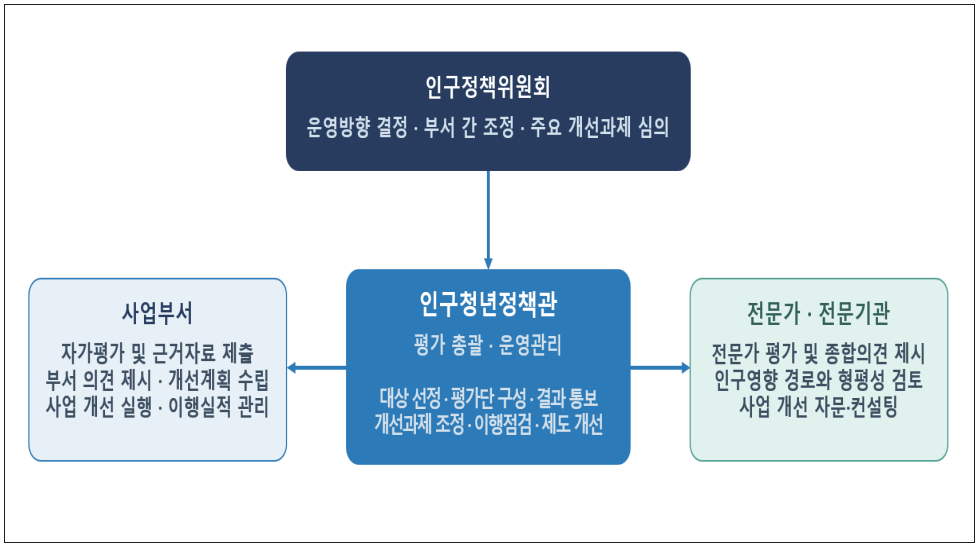
- 사업부서는 사업목표, 정책대상, 추진실적, 예산 및 자체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자가진단을 수행함
- 전문가는 인구영향에 대한 경로, 정책 수요와의 적합성, 접근성 및 형평

성, 정주 환경개선 가능성 및 정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인구영향평가 총괄 부서는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자료 확인과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 과제를 확정해야 함

❍ 김해연구원, 지역대학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지, 동일 또는 소수의 전문가가 장기간 특정 분야만 평가하지 않도록 전문 분야와 참여기간 등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6-2)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추진 체계별 역할

3 | 제도적 기반 확대

1)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보완 및 개정

❍ 현행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는 인구영향평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 평가 대상, 시기, 방법, 추진주체 및 결과 환류 등 구체적 사항이 필요함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의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인구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본 원칙의 수립
- 평가 대상 정책·계획·사업의 범위와 제외기준
- 사전검토,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의 실시 근거
-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역할
- 평가 결과 통보와 사업부서 개선계획 제출
- 개선과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종합보고서 작성
- 담당공무원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
- 평가 결과 공개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

❍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김해시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표준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조례를 통해 기본 원칙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실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운영 지침(표준 매뉴얼)로 구체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 운영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사전검토서·자가진단서·전문가 평가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판단기준과 근거자료 목록
- 종합의견 및 개선과제 작성기준
- 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 의견제출과 조정절차
- 개선계획서 작성 및 이행점검 방법

- 평가자료의 보관·공개 및 개인정보 처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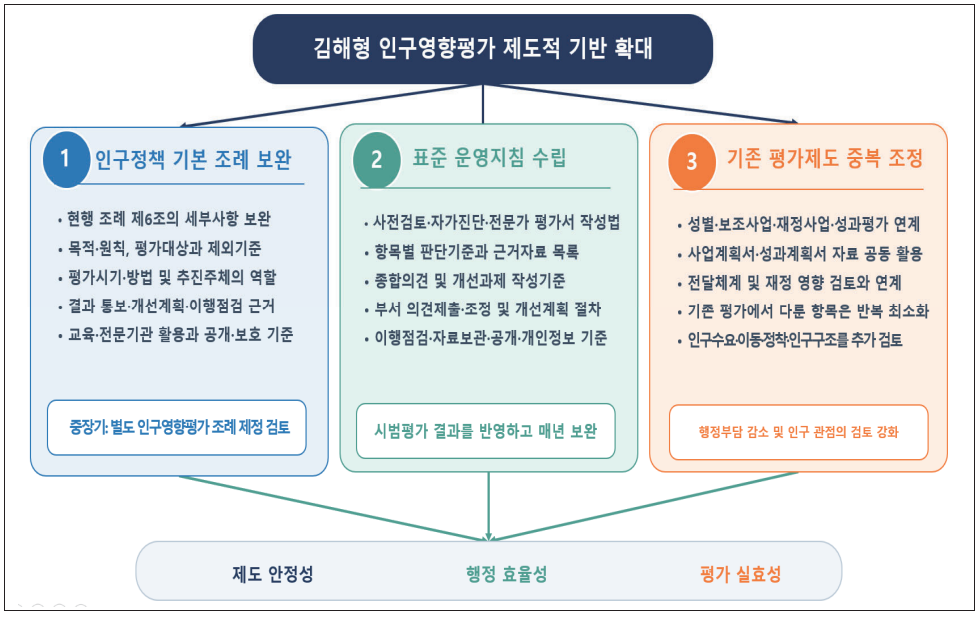
❍ 또한 운영지침은 시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작성하고 매년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기존 다른 평가제도의 중복성 확인

❍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사업 평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각종 성과평가와 자료 제출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행정자료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사업 개요, 예산, 추진 실적 및 기존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가 이미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성과계획서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존 제도와의 연계, 전달체계 및 재정 영향 검토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함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기존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대상, 인구수요, 이동·정착 및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6-3)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제도적 기반 확대 방안

4 | 평가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 방안

1) 담당 공무원 교육

❍ 제도의 정착을 위해 총괄부서 담당자뿐 아니라 평가 대상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총괄부서 담당자 및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으로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

❍ 집합교육과 사업별 컨설팅을 병행하여,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안정성을 높임

<표 6-1> 담당 공무원 단계별 교육 방안

구분		교육 내용	비고
기본교육		- 인구 변화 데이터 활용 - 인구영향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인구정책의 개념 및 사례	지자체 공무원 (필수교육)
심화 교육	실무교육	- 인구영향 자가 진단서 작성 - 인구영향 경로 설정 - 인구정책 성과지표 작성	총괄부서 담당자 및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
	분야별 컨설팅	-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컨설팅 : 돌봄·보육, 청년·일자리, 주거·교통, 외국인 및 고령친화정책 등 분야별 사례 검토	총괄부서 담당자 및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
	환류 체계	- 평가결과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요구 반영 - 개선 방안 작성	총괄부서 담당자 및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

자료) 연구자 작성

2) 성과지표와 평가 결과의 체계적 관리

(1) 평가 결과 통보와 부서 의견 수렴

❍ 전문가 평가가 완료되면 총괄 부서는 사업별 종합 의견과 개선 과제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사업 부서는 사실관계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평가자료의 오류나 사실관계는 부서 확인을 거쳐 재확인함
- 평가자와 사업부서의 판단이 다른 경우 판단 차이의 원인과 추가 확인자료를 종합 의견에 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함
- 개선과제는 부서 협의를 거쳐 즉시 반영, 차년도 반영, 중장기 검토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후 사업 부서는 최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총괄 부서는 개선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대상과 지원 기준 조정, 절차의 간소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접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개선과제 이행점검 및 종합 결과 공유

❍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신규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인구정책과의 연계성, 정책대상 및 예상 인구영향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에서 제시된 개선과제, 성과지표 및 자료수집 계획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유사사업의 경우 대상과 기능을 비교하여 공동홍보, 통합접수, 서비스 연계 또는 기능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결과는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정책 효과 및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확대·유지 사업은 정책수요, 대기수요 및 접근성 등을 근거로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하도록 함
- 개선사업은 단순 감액보다 인력·운영비·홍보비 등 필요한 항목 간 전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함

- 인구영향평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구조적 과제는 개별 사업의 개선뿐만 아니라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총괄부서는 매년 인구영향평가 종합 결과를 작성하여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평가 대상과 평가절차, 사업별 주요 강점과 개선과제, 전년도 개선과제 이행 결과, 차년도 평가 및 지표 보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종합결과 공개 시에는 사업의 서열화나 특정 부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내용과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부서 포상, 우수사례 공유, 부서 성과평가 연계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가 필요함

<표 6-2> 인구영향평가 결과 반영 방안(예시)

평가결과	사업계획 반영	예산반영	성과관리
확대·유지	수혜 대상·공급 지역의 적정성 보완	수요와 성과 근거기반 유지·확대 검토	수혜기간, 접근성, 만족도 관리
개선·조정	지원기준·전달방식·운영 프로세스 개선	운영비 재배분 및 개선 비용 반영	개선과제 이행률 관리
통합 검토	유사사업 기능 및 대상 조정	중복지출 조정 후 재원 재배분	통합 전후 영향 점검
현행유지	사업의 안정적 운영	적정 재원 유지	핵심 성과지표 지속 관리

자료) 연구자 작성

5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로드맵

-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시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 분야와 행정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함
- ❍ 1단계에서는 시범 평가로서 제도 확대보다 평가서식과 절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함
- ❍ 2단계는 기반구축 단계로서 조례·지침·전담기능을 정비하여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3단계에서부터 평가 대상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4단계에서는 행정 연계와 안정화를 기반으로하여 평가 결과가 예산과 계획에 실제 반영되었는지를 관리하도록 함. 또한 평가제도 자체의 효과와 행정 부담을 재평가하여 평가 대상, 절차, 성과지표를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6-4) 김해형 인구영향평가 로드맵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1 |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 김해시 인구변화와 정책 여건

❍ 김해시의 2025년 말 총인구는 56만 5,432명으로 전년보다 3,626명 증가함.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1,762명 많은 순유입을 기록하여 전체 인구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인구는 2016년 18만 1,630명에서 2025년 14만 8,11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대 인구의 순유출은 지속되고 있음
-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만 7,975명에서 8만 6,871명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외국인 주민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신규 주거지역과 읍·면 및 원도심 간 인구구조와 생활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김해시의 인구정책은 총인구 증감뿐 아니라 연령구조, 인구이동, 가구 구조, 외국인 정착, 생활권별 정책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다수 부서에서 추진하는 인구 관련 사업의 목표, 정책대상, 성과지표 및 유사·중복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체계 설계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인구구조, 이동과 정착, 돌봄 부담 및 정주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평가의 목적은 사업 간 순위를 정하거나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인구 관련성 및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음

❍ 평가 대상은 시범 평가를 고려하고 인구정책과의 관련성, 재정 규모, 정책대상의 범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설정함

-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심층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목록을 대상으로 1차 검토를 실시한 뒤 인구영향과 정책개선 필요성이 큰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 1차 검토에서는 사업의 대상 인구집단, 인구구조·이동·정착·생활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 신규·주요 변경 여부, 정책 수요와 미충족 수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부서 간 연계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신규·주요 변경 사업은 사업계획과 예산 요구 전에 사전검토하고, 계속사업은 수요·대기·지역별 접근성·성과자료를 고려해 연차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성, 인구정책 부합성, 정주환경 개선성, 시민체감도, 정책효율성의 영역으로 구성함

- 사업부서의 자가진단을 통해 사업 목표, 추진 실적, 정책 대상 및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전문가 평가는 인구영향 경로, 정책 수요와의 적합성, 접근성·형평성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함

◘ 돌봄·보육 분야 시범 평가 결과 및 한계

❍ 시범 평가로 돌봄·보육 분야는 출산과 양육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 아동의 성장환경 및 가족의 지역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

- 김해시는 젊은 가족과 아동의 정책수요가 높은 동시에 맞벌이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차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365안심보육,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를 실시함

❍ 시범 평가 결과, 5개 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와 양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확인됨

- 365안심보육사업은 긴급보육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으므로 사업을 유지하되, 권역별 접근성, 이용자 인지도 및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 정도 등 성과지표의 개선과 관리가 필요함
-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은 양육비 부담 완화와 놀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운영인력의 안정성, 자료 관리기준 및 지역별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사업으로 확대 필요성이 높으며, 돌봄 인력 확보, 대기시간 단축, 수요·공급 간 매칭 및 읍·면 지역 서비스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 기능을 유지하되, 시설별 이용실적과 생활권별 수요를 고려한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함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은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 범위와 지원 수준, 정책 체감도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을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공통적인 한계는 이용자 수와 예산 집행률 등 산출 중심의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는 수요 충족률, 서비스 대기시간, 지역별 접근성, 돌봄 부담 감소, 이용자 만족도 및 정착 의향 등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비이용자와 대기자의 수요를 함께 조사하고, 연령·지역·가구유형별 이용자료를 축적하여 정책 사각지대와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돌봄·보육정책을 일자리, 주거, 교통 및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가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함

❍ 이번 시범 평가는 돌봄·보육 분야의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결과를 청년·주거·일자리·교육 등 다른 정책분야에 그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시범 평가는 제한된 사업자료와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사업의 정책적 관련성과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 것으로, 출생·정착 등 장기적인 효과 확인 절차는 아님

❍ 따라서 시범 평가 결과는 사업 간 성과의 우열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평가절차와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운영체계 및 환류 방안

❍ 김해형 인구영향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구청년정책관이 평가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전문가 구성 및 결과 관리를 총괄하고, 사업부서는 자가진단과 개선과제 이행을 담당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 총괄부서는 평가계획 수립부터 결과 통보와 이행 점검까지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사업부서는 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경우 인구정책위원회나 별도의 전문가단을 활용하여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평가 결과는 '결과 통보–부서 의견수렴–개선과제 확정–개선계획 수립–차년도 계획·예산 반영–이행점검'의 절차로 환류하는 것이 효과적임

- 개선 과제는 즉시 반영, 차년도 반영,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는 이용자 수·지원 건수·예산 집행률 등 산출지표와 만족도·정주 의향 등 시민 체감형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함
- 제도적으로는 기존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영향평가 근거를 보완하고, 평가 대상, 시기, 방법, 추진주체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함

❍ 종합하면, 김해형 인구영향평가는 평가업무의 추가보다는 기존 정책과 사업을 인구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관리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범 평가를 통해 평가 기준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평가 결과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정책개선 중심의 단계적 운영

❍ 인구영향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점수와 등급보다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초기에는 돌봄·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인구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고, 운영 경험과 부서 수용성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
- 평가 결과를 사업의 서열화나 일률적인 예산 조정에 활용하기보다 사업의 유지·보완·확대·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함

❍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실제 행정절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전검토 결과는 사업목표, 정책대상, 추진방식 및 성과지표 설정에 반영하고, 사후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서 작성 시 개선 근거로 활용해야 함
-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는 수요와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는 대상, 지역, 전달체계 또는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 평가자료와 행정 역량 강화

❍ 인구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이동, 서비스 접근성 및 정착 의향 등 사업의 인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목적, 평가서 작성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초기에는 총괄부서와 전문가가 평가자료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향후에는 인구영향평가가 실제로 사업내용, 예산, 성과지표 및 시민 체감도를 개선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경상남도의 평가체계 및 국가 인구정책 방향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경기도(2025), 「2025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경기도(2024), 「2024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경인지방데이터청 (2024.), 「2024년 수도권 청년의 삶」

구본우, 윤재봉, 김민정(2024), 「창원특례시 인구영향평가 및 시범 평가」, 정책연구 2024-01, 창원시정연구원

국가데이터처(2026),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국가데이터처(2025),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2025), 「한국의 사회동향 2025」

김세현(2024), 「부산광역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연구」, 현안연구 2024-12-219, 부산연구원

김해시(2025),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박진경(2025),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조」, CNI 세미나 2025-001, 충남연구원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시도 및 교육청(202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양종민(2024),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정책연구, 인천연구원

전라남도(2024), 「전라남도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

최지은 외(2025),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김해시 공공데이터플랫폼 https://stat.gimhae.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전략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부 록>

김해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정책·계획 및 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와 결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김해시가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 등이 인구의 규모·구조·분포, 인구이동과 정착 및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검토”란 신규 또는 주요 변경 정책·계획·사업의 시행 전에 인구정책과의 연계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및 예상되는 인구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진단”이란 평가 대상 정책·계획·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업목표, 정책대상, 추진실적, 성과 및 개선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문가 평가”란 인구·경제·사회·복지·주거·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자가진단 결과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영향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김해시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평가 대상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인구영향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가 사업계획, 예산, 성과지표 및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과 인구영향평가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구영향평가 주체)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인구영향평가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구영향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2.평가 대상 후보 정책·계획 및 사업의 조사와 선정

3.평가기준·지표·서식 및 운영지침의 마련

4.사전검토,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의 운영

5.사업부서 교육과 평가자료 작성 지원

6.평가 결과 통보 및 사업부서 의견수렴

7.사업별 개선과제의 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8.연차별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9.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10.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구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계획 또는 사업 중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포함된 사업

2.결혼·임신·출산·양육 및 돌봄에 관한 정책

3.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및 노인에 관한 정책

4.일자리·산업·주거·교통·교육·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에 관한 정책

5.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유입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정책

6.읍·면·동별 인구 불균형과 생활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관한 정책

7.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 사항 중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8.그 밖에 시장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간이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1.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제한적인 경우

2.단순 시설 유지, 물품구입 또는 내부 행정에 관한 사업
3.사업기간이 짧거나 예산 규모가 작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사업
4.다른 영향평가나 성과평가를 통해 인구영향에 준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사업
5.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사업
6.그 밖에 시장이 평가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평가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 대상의 선정)
①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와 인구정책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평가대상 후보사업을 조사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1.김해시 인구정책 목표와의 관련성
2.정책대상의 범위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인구구조·이동·정착 및 정주여건에 미치는 영향
4.사업의 예산규모와 지속기간
5.지역별·계층별 정책수혜의 차이
6.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 필요성
7.평가자료 확보 가능성과 평가의 실익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평가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방법) ① 제8조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또는 주요 변경 정책·계획 및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2. 일정 기간 이상 시행된 계속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와 관련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인구영향평가보

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과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개선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대체 가능한 개선방안을 개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 결과와 개선과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주요업무계획,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는 예산의 자동적인 증액 또는 감액 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정책수요, 사업성과, 재정 여건 및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이행상황 점검)① 총괄부서는 사업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미완료된 개선과제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다음 연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나 인구영향평가 연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선과제 이행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사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시장은 매년 인구영향평가 추진실적과 개선과제 이행실적을 분석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김해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인구영향평가 연간계획

2.평가 대상 선정
3.주요 평가 결과와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부서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5.평가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전문기관 등의 활용)①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문기관·연구기관·대학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대상과 업무량이 확대되는 경우 인구영향평가 전담기능 또는 전문지원체계의 설치·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
① 총괄부서는 인구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자료의 중복 제출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행정자료와 다른 평가제도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종합결과와 주요 정책개선 실적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사업 간 점수나 순위보다 주요 정책효과, 개선과제 및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3.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4.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제19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인구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평가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집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평가자료의 수집·이용·보관 및 폐기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시범사업)
①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평가기준과 운영절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정책분야나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기준, 세부지표, 평가서식 및 운영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구문제 대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부서, 기관 또는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은 시장이 정하는 연간 평가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발 행 2026년 10월 31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
ISBN : 979-11-221411-4-6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